

제 3 회 국부통계 조사를 위한  
가계자산조사요령서

1988. 5

경 제 기 획 원

# 목 차

I. 조사개요 .....	3
1. 조사목적 .....	3
2. 법적근거 .....	3
3. 조사기준시점 및 실사기간 .....	3
4. 조사지역 및 대상범위 .....	3
5. 조사방법 .....	4
6. 조사사항 .....	5
II. 조사일정과 유의사항 .....	6
1. 조사일정 .....	6
2. 조사원 유의사항 .....	6
III. 조사표 기입요령 .....	8
1. 일반적인 사항 .....	8
2. 조사표 기입요령 .....	8
3. 품목해설 .....	21
IV.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제출 .....	52
1. 조사표 내용검토 .....	52
2. 조사표류 제출 .....	54
< 부표 1 > 연령대조표 .....	56
< 부표 2 > 직업분류표 .....	59
< 부표 3 > 행정구역분류 번호표 .....	66

# I. 조 사 개 요

## 1. 조사목적

국부통계조사의 일반적인 목적은 국민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의 존재량을 파악함으로써,

가. 경제적 국력, 개발성과의 측정, 국제비교를 가능케 하며,

나.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구명하여 자본계수를 산출하고,

다. 부의 구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어 경제개발계획, 국토건설계획 등 제반 경제시책입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특히, 이번 조사는 국민대차대조표 작성을 가능케 하여, 국민계정의 통합편제에 기여함은 물론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법적근거

통계법 제 3 조 및 동시행령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 111-11-11 호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

## 3. 조사기준시점 및 실사기간

가. 조사기준시점 : 1987년 12월 31일

나. 실 사 기 간 : 1988. 6. 1 ~ 6.30

## 4. 조사지역 및 대상범위

가. 조사지역의 범위

우리나라 행정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되는 전지역

나. 조사대상가구의 범위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가구와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상업행위나 여행을 목적으로 1년이상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가구

○ 가구의 정의

가구라함은 1인 또는 2인 이상이 한데 모여 취사, 취침, 생계를 같이 하는 모임을 말한다.

〈조사대상 제외가구〉

- 기숙사, 양로원, 고아원, 합숙소, 기타 합숙소등에 있는 가구
- 외교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등에서 공무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가구와 외국군인 및 군속가구

다. 조사대상 자산의 범위

조사 기준시점 현재 대상가구가 가계를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가재자산

- 주거용 건물 : 주택은 물론 주택이외의 주거용 건물도 포함한다.
- 일반 가재자산 : 내용년수가 1년이상인 가계용 유형자산

〈조사대상 제외자산〉

- 사업용 자산(농·어업용기구 및 영업용자산)
- 애완용동물 및 관상수
- 예술품, 골동품 및 서적
- 신체보조용 기구(안경, 보청기등)
- 주택의 준고정 부착물(싱크대, 형광등 등)

**5. 조사방법**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질문조사

**6. 조사사항**

- 가. 가구에 관한 사항
- 나. 거주지 주택에 관한 사항
- 다. 거주지 이외 소유주택
- 라. 가구소득에 관한 사항
- 마. 내구재
- 바. 준내구재

## Ⅱ. 조사일정과 유의사항

### 1. 조사일정

가. 조사원 교육 : '88. 5.27 ~ 5.31

나. 조사준비 : '88. 5.28 ~ 6. 1

경제기획원 지방사무소에서 작성한 요도와 가구명부를 가지고 자가 말은 조사구를 요도상의 거처일련번호 순서에 따라 모든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여 전입, 전출된 가구를 확인 가구명부를 보완한다.

다. 본 조사 : '88. 6. 1 ~ 6.30

조사구 요도에 표시된 거처번호 순서에 따라 가구를 방문하여 적합한 응답자(가구주, 가구주의 처등)에게 질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한다.

내 구 재 조사 : '88. 6. 1 ~ 6.15 (15일간)  
준내구재 조사 : '88. 6.16 ~ 6.30 (15일간)

라. 조사표류 제출 : '88. 7. 1 ~ 7.10

위 기간중 통계사무소에서 지정한 일자에 제출

### 2. 조사원 유의사항

가. 가구를 방문하면 먼저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협조문을 전달하여 응답자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

나. 조사에 임함에 있어 시중 친절, 성실,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하며 본 조사는 통계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이며 세금등 타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응답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조사원은 조사가구를 방문할 때 시간의 선택에 유의하여 식사시간

- 과 야간방문을 피하여야 하며 또한 조사대상 가구가 관혼상제 등으로 조사 응답에 적절치 못한 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 라. 응답자의 선택은 응답능력이 있는 가구주 혹은 가구의 주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가정부 등 가구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아서는 아니된다.
- 마. 조사에 있어서 누락, 중복, 허위, 조작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기입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 바. 응답거절 가구가 발생시에는 조사 목적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설득하여야 하며 그래도 불응할 경우는 담당 지도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지시받도록 한다.
- 사. 조사기간중에는 조사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하며 개인, 단체 또는 사업체 등을 위한 어떠한 사항도 이 조사와 함께 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가족이나 친지등에게 대리조사케 하여서도 안된다.
- 아. 조사요령서를 완전히 숙지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 자. 조사 결과 알게된 개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비밀로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통계법 제 18조 1항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차.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임의로 조사표를 작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 Ⅲ. 조사표 기입요령

#### 1. 일반적인 사항

- 가. 조사표 기입은 반드시 흑색볼펜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 나. 모든 숫자는 1,2,3 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여야 한다.
- 다. 숫자 기입이 아니고 ○표하는 경우 해당번호위에 ㉞ 과 같이 분명히 표시한다.
- 라.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좌측상단에서 우측하단까지 사선 ( \ ) 을 한다.
- 마. 기입도중은 물론 기입후에도 숫자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횡선으로 두줄을 긋고 정정한다.
- 바. 정정 또는 어느 경우에도 적색볼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조사표 기입요령

<조사표 표지>

- 가. 주 소 : 동, 읍, 면까지 기입한다.
- 나. 조사구 번호 : 가구명부상의 해당 조사구 번호를 기입한다.
- 다. 집락및거처번호 : 가구명부상의 해당 집락 및 거처번호를 기입한다.
- 라. 가 구 번 호 : 가구명부상의 해당 가구 번호를 기입한다.
- 마. 작 성 년 월 일 : 조사완료일을 기입한다.
- 바. 응 답 자 : ( ) 내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기입하고, 그 밑에 응답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도장을 찍는다.
- 사. 조 사 원 : 조사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도장을 찍는다.
- 아. 지 도 원 : 지도원의 성명을 기입하고 도장을 찍는다.



**가구에 관한 사항**

**① 가구 구분**

가구구분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고 해당번호에 ○표한다.

가) 농림어가란 생계, 영리를 목적으로 직접 농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중 다음 각호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농어가로 보며, 비농림어가란 농어가 이외의 가구를 말한다.

농가, 어가의 정의

농 가	어 가
1. 경지(논, 밭, 수원지)를 300평 이상 직접 경영하는 가구	1. 판매를 목적으로 채포나 양식업을 자영한 가구
2. 고등원예나 특용작물은 각각 100평 이상, 과수나 묘목은 200평 이상 재배하는 가구	2. 직접 어업을 경영하지 않고 타인이 경영하는 수산동식물의 채포나 양식업을 하는 사업체에 고용된 어업종사자가 있는 가구 (연간 60일이상 고용)
3. 대가축(한우, 젃소, 고기소)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4. 중가축(돼지, 면양, 산양)을 3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5. 소가축(토끼)을 40마리 이상 또는 가금(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을 30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6. 꿀벌을 5군 이상 양봉하는 가구	
7. 누에씨 12g(1상자) 이상 소잠하는 가구	
8. 연간 총수입중 복합경영한 농업수입이 위의 각호별 수입보다 많은 가구	

나) 근로자, 근로자의 가구의 구분은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구분	내용 설명	예시
근로자 가구	<p>개인 또는 법인회사, 상점, 관공서, 농협등 각종 단체, 사업체에 고용되어 주로 정신적, 기술적, 관리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단, 법인경영자, 시·도지사, 차관급 이상은 근로자와 가구에 분류)</p>	<p>교원, 국공립병원의사, 간호원, 판사, 검사, 공장장, 현장감독, 신문기자, 선장, 항해사, 사진사, 보험회사의판원(고정봉급자), 교환수, 관광안내원, 공무원 등</p>
	<p>개인 또는 법인회사, 상점, 관공서, 농협등 각종단체 및 사업체에 30일 미만의 기간 또는 매일매일 계약에 의하여 고용되어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p>	<p>기능공, 견습공, 인쇄공, 운전수, 수위, 급사, 이·미용사, 청소부, 수금원, 판매점원, 건축장노동, 취로사업장 노동자 등</p>
근로자의 가구의	<p>개인회사를 경영하며 기획,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p>	<p>상점, 제과점, 사진관, 이·미용실, 전당포주인, 개인택시운전사, 의판원(고정봉급없는자) 개인병원원장, 개인회사사장등</p>
	<p>가족 또는 고용인이 5인 이상 고용된 법인회사, 단체의 봉급자로서 기획관리, 행정사무,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사람</p>	<p>회장, 이사장, 사장, 이사, 차관, 청장급이상, 시·도지사등</p>
	<p>개인이 자기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능 지식을 이용하여 일하는 사람(단, 회사에 고용된 사람은 근로자 가구에 분류)</p>	<p>변호사, 공인회계사, 개인 의사, 세무사, 관세사, 화가, 도안사, 저술가, 작곡가, 작가, 평론가, 가수, 배우, 점장이, 관상가등</p>
	<p>위에 분류되지 않은 자와 무직자</p>	<p>위의 분류되지 않은 자와 무직자</p>

## ② 가구원수

가구원이란 통상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가구원이 될 수 있다.

<가구원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람>

- 친척방문을 위하여 잠시 떠나 있는 사람
- 출장, 여행중인 사람
- 병원에 입원중인 사람과 그 보호자
- 선박, 항공기 탑승 승무원
- 동원 소집중인 예비군
- 경찰서 보호실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 함께 살고 있는 가정부, 점원, 하숙생이 5인 이하인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한다.

<가구원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람>

- 영내거주 군인, 전투경찰에 임명중인 사람
- 실형 언도를 받고 교도소, 소년원, 보호감호소에서 복역중인 사람
- 요양소에서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사람
- 기숙사, 양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
- 타지역에서 하숙 및 자취를 하고 있는 사람

## ③ 가구주 연령

가)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를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나)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는 그 중 한 사람을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

다) 연령은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관계없이 출생년도, 세는 나이, 띠 및 생일을 물어 연령대조표(부표1)를 참조하여 만나이로 환산 기입한다.

#### ④ 가구주 직업

가) 맡은 일의 종류

하고 있는 일을 물어 기입하되 회사원, 기능공, 상업등으로 막연히 기입하지 말고 보험사무, 전기고장수리, 잡화소매 등과 같이 상세히 기재한다.

나) 직명 또는 직위

일하고 있는 곳에서의 직위를 말하며 회사원, 사무원등과 같이 기입하지 말고 경리계장, 평사원, 목공반장, 상점주인등과 같이 상세히 기재한다.

다) (가)항 맡은 일의 종류, 및 (나)항 직명 또는 직위를 직업분류표(부표2)를 참조하여 해당번호에 ○표 한다.

### 거주지 주택에 관한 사항

#### ⑤ 주택점유형태

아래 정의에 의하여 해당번호에 ○표 한다.

- 1) 자가 : 법률상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가구주 또는 가구원(동거인 제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집
- 2) 전세 : 집주인에게 정해진 돈을 이자없이 맡기고 세들어 살다가 나갈때 도로 찾게 되는 셋집(방)
- 3) 월세 : 보증부월세, 삭월세, 월세로 사는 셋집(방)
- 4) 무상 : 친지로부터 세없이 빌려사는 집

- 5) 임대주택 및 관공사택 : 주택건설업체(주택공사등), 관공서, 회사, 각종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유지비만 내거나 무상으로 살고 있는 집(임대아파트는 월세를 내더라도 임대주택으로 함)

## ⑥ 거주구분

### 1) 주가구

- 한주택에 한 가구가 사는 경우에는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주가구로 본다.
- 한주택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인가구가 주가구가 되며 주인가구 없이 세든 가구만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오래 살고 있는 가구를 선정하여 주가구로 한다.

2) 동거가구 : 주가구 이외의 가구로 7~10 란은 사선(\)한다.

## ⑦ 주택의 종류

주택이란 보통 독채로 된 살림집이나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이 한 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지은 집을 말하며 해당번호에 ○표 한다.

- 1) 단독주택 : 원칙적으로 한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 2) 아 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상의 건물로써 한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상가 아파트도 여기에 해당된다)
- 3) 연립주택 :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개념의 주택으로써 다만 건물의 높이가 3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2~3층의 빌라, 맨션과 다세대주택 등은 여기에 해당된다).
- 4)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 사업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건축된 건

물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 ⑧ 건축구조

건물의 기둥과 벽을 쌓은 형태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해당 번호에 ○표한다.

- 1) 철근콘크리트조 : 아파트, 상가건물의 주택과 같이 기둥을 철근콘크리트로 세우고 그 사이에 시멘트벽돌, 블럭, 연와 벽돌 등으로 벽을 쌓은 집
- 2) 철골조 : 기둥을 철골로 세우고 그 사이에 시멘트벽돌, 블럭, 연와 벽돌 등으로 벽을 쌓은 집
- 3) 연와, 석조 및 블럭조 : 기둥과 벽을 연와벽돌, 시멘트벽돌, 인조석, 자연석, 시멘트 블럭으로 쌓은 집
- 4) 목 조 : 일본집과 같이 기둥 및 벽을 모두 나무로 붙인 집을 말한다.
- 5) 목골몰탈조 : 주로 한식집으로서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흙, 블럭, 벽돌등으로 벽을 쌓은 집
- 6) 토벽조 : 흙벽돌로 벽을 쌓은 집으로 흙벽돌 위에 시멘트를 바른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 7) 간이 목골몰탈조 : 벽이 루핑, 판자, 스테이트 등으로 되어 있으며 임시로 거쳐할 수 있도록 지은 집

#### ⑨ 연건평 및 대지면적

건평 및 대지면적은 등기부, 가옥대장 또는 토지대장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총면적을 말하며 연건평의 경우 주건물 일부에 붙어 증축을 한 경우는 그 구조를 보아 완전한 영구 건물일 경우에만 건

평에 합산하고 판자, 합판, 비닐등 임시적으로 가설된 부분은 제외한다.

#### 1) 연건평

한울타리안에 있는 전체 건물 면적을 말하며 주거면적과 병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입한다.

가) 주거면적 : 순수하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면적(공유면적 포함)을, 단독주택의 경우 별채로 되어 있는 연탄광, 화장실, 목욕탕, 차고, 지하실 등이 주거면적에 포함한다.

나) 병용면적 : 건물의 면적중 상점, 병원, 농촌의 양곡창고, 외양간등과 같이 주거이외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조사하여 기입한다.

#### 2) 대지면적

대지의 면적을 말하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만 조사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은 "000"으로 기입한다.

### ⑩ 신축년도

집이 최초로 지어진 년도를 조사하는 란으로 1900년 이전에 지어진 집은 1900으로 표시하며 주택의 구입방법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구옥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각기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조사한다.

#### 1) 신축주택

집을 직접 새로 지었거나 새로 지은 집을 구입하였을 때는 완공년도와 구입년도를 조사 기입한다.

## 2) 구 옥

남이 살던 집을 구입하였거나 상속을 받아 살고 있는 경우는 구입년도와 상속년도를 조사하고 구입 또는 상속이전의 경과년수를 조사한 후, 이를 합산하여 신축년도에 기입한다.

### 거주지이외 소유주택

현거주지 이외 다른 곳에 있는 주택으로 매매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자기소유의 주택을 조사한다.

- 가) 5란 1항의 자가 소유하는 물론 2. 전세, 3. 월세, 4. 무상, 5. 임대주택 및 관공사택에 살고 있는 사람도 다른 곳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두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관공사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대부분 다른 곳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조사에 누락이 없도록 유의한다.
- 나)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불하였거나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만 조사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구옥 또는 완공주택에 한하며 신축중에 있는 건물은 제외한다.

### ⑪ 소재지

구·시·군까지 기입한 후 행정구역분류번호표(부표 3)를 참조하여 행정구역 번호를 기입한다.

### ⑫ 주택의 종류

### ⑬ 건축구조

### ⑭ 연건평 및 대지면적

### ⑮ 신축년도

앞의 7~10란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 기입한다.



## 가구소득에 관한 사항

- 가) 가구원중 관공서, 회사등에서 봉급이나 월급 또는 상여금으로 받은 일체의 돈과 남의 상점 또는 남의집, 취로사업장 등에서 일을 해주고 받은 품삯, 노임등을 조사하며 현물로 받은 것은 시가로 환산 기입한다.
- 나) 가구의 소득원이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입인 경우에는 경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월평균소득으로 파악하여 기입한다.
- 다) 동거인의 경우 가사 사용인의 소득은 조사하지 않으나 그밖의 동거인의 소득은 조사한다.

### <조사에 포함되는 소득>

- 빌려준돈 및 금융기관에 저축하고 이자를 받았을 경우
- 주식(증권)의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 집(방) 또는 땅을 빌려주고 세를 받았을 경우
- 친지 또는 남에게 생활비로 보조받았을 경우
- 퇴직연금,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양로연금, 보훈처등에서 매월, 분기별 또는 년 1,2회 연금을 받는 경우
- 구호양곡을 받았을 경우 이를 시가로 환산한 금액

### <조사에서 제외되는 소득>

- 은행에서 정기에금이 만료되어 찾은 경우
- 계를 탔을 경우
- 빌려쓴 경우나 빌려주었던 돈을 받았을 경우
- 부동산, 유가증권을 팔았을 경우
- 퇴직금, 보험금(사망, 산재, 교육비등)을 일시불로 받았을 경우

**⑩ 월평균 가구원 소득**

- 가) 가구원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을 말한다.
- 나) 가구원별로 월평균소득을 조사 기입하되 소득자가 4명이상 있을 경우에는 3명까지는 가구원별로 조사하고 나머지는 전부 합산하여 4항에 기입한다.
- 다) 계에는 1~4항을 합산 기입한다.

**⑪ 월평균 기타 소득**

16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이외의 이자, 배당금, 방세등의 가구전체 월평균 소득을 기입한다.

**⑫ 월평균 소득합계**

16란의 계와 17란의 기타소득을 합계하여 기입한다.

**내 구 재**

- 가) 내구재에는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가재중 순수히 가계용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한하여 조사하며 가계와 사업용으로 병용하는 경우에는 가계용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큰 것만 조사대상이 된다.
  - 예 1) 음식점의 경우 식기, 냉장고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 2) 승용차의 경우 봉급을 받는 자가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되나 주로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나) 임대차 자산의 처리
  - 타인에게 빌려 주었거나(무상, 유상 포함) 전당포등에 저당되어 있는 물건은 조사하며 이와 반대로 타인에게 빌려서 사용하는

물건은 조사하지 않는다.

다) 월부 및 할부구입 자산의 처리

완불하지 않은 월부 구입품은 조사하며,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현품은 인수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사한다.

라) 동거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도 조사한다.

마)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품목이 조사표상에 없을 시에는 그 물품의 용도, 재질 규격등을 물어 유사품목에 포함 조사한다.

바) 두가지 이상의 용도로 되어 있는 품목은 주용도로 사용하는 곳에 분류 조사한다.

#### ⑲ 취득시기 및 수량

가) 건물의 외형만 보고 그 가구에는 특정 물품이 없을 것이라는 관념을 버리고 조사표상에 있는 품목 순위에 따라 하나 하나 소유 여부를 묻고 해당품목이 있을 경우 규격별, 취득년도별로 구분 보유수량을 조사기입한다.

나) 취득이란 자기가 직접 구입한 것과 남에게서 얻은 것이 모두 포함된다.

다) 취득시기가 명확치 않을 경우에는 결혼, 분가, 자녀출생, 이사년도 등의 시기를 물어 취득시기를 조사한다.

#### ⑳ 취득상태

가) 최초 구입시 신품일때는 1, 중고품일때는 2에 ○표 한다.

나) 남에게 얻었을 경우에도 신품인 경우는 1, 중고품인 경우는 2에 ○표 한다.

다) 동일품목의 동일규격 상품을 신품과 중고품 상태로 2개이상 구

입한 경우에는 신품은 본란에, 중고품은 같은 페이지의 마지막 빈칸에 품목번호를 기입하고 취득시기 및 수량과 취득상태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기입한다.

### 준내구재

조사대상품목 구분의 일반적 기준은 내구재 설명의 가~바와 동일함.

#### ⑬ 취득시기 및 수량

“계”란에는 소유수량 합계를 조사기입하고 “87”란에는 “계”란중 '87년에 구입한 것만 조사기입한다.

### 3. 품 목 해 설

#### 내구재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1 ~ 31	I. 가 구 가. 거실, 응접실용가구 1. 양 복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복장은 주로 옷장, 이불장, 거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중 하나 또는 두가지로 구성된 것도 있다.</li> <li>양복장은 외부의 치장 및 크기에 의하여 규격 구분을 한다.</li> <li>호마이카장중 약간의 자개를 부착한 것은 호마이카장에 분류하고 자개로 인하여 가격차이가 심한 것은 철기 자개장에 분류한다.</li> <li>한식장이란 옷칠한 장으로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 전통 공예장을 말하며, 화각장이나 옥돌장등은 한식장에 포함하여 조사한다.</li> </ul>
32	2. 아 동 용 옷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복장보다 높이가 낮으며 학생 또는 아동용으로 사용됨.</li> </ul>
33	3. 간 이 양복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립용 옷장 또는 비키니 옷장이라고도 하며 작크를 사용하여 여닫게 되어 있어 옷 또는 침구를 보관한다.</li> </ul>
34 ~ 43	4. 설 합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상단에 장식대가 있는 것이 있으며, 단수는 설합의 층수로 계산하며 상단에 장식대가 있는 경우 장식대는 단수에 삼입하지 않는다.</li> </ul>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44 ~ 49	5. 침 대	• 매트리스를 포함하며 성인용은 재질, 아동용은 층수로 규격 구분한다.
50 ~ 55	6. 화 장 대	• 좌식이란 의자없이 앉아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입식은 의자 또는 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입식의 경우에는 대부분 화장대용 의자가 있으므로 의자의 누락이 없도록 한다.
56	7. 화장대용 의자	• 입식화장대에 사용하는 의자를 말함.
57 ~ 59	8. 거 울	• 손거울을 제외한 벽걸이용을 말하며, 소형은 20 cm × 30 cm, 중형은 20 ~ 40 cm × 30 ~ 60 cm, 대형은 40 cm × 60 cm 이상임
60 ~ 61	9. 입식 옷걸이	• 입식으로 되어 있으며 여러개의 작은 옷걸이가 있음.
62 ~ 67	10. 문 잡	• 문서나 문구를 넣어두는 것
68 ~ 76	11. 책 장, 장 식 장	• 장식품, 책, 그릇등의 보관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가정에 따라 책만을 보관하는 책장이나 식당에서 식기만을 보관하는 찬장, 장식품만을 보관하는 장식장을 모두 여기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77 ~ 79	12. 장 식 대	• 장식장보다 높이가 낮으며, TV, 전축, VTR 등을 올려 놓을 수 있는대를 말하며, 소형 장신구를 보관하거나 사물함 등으로 사용하는 2 단이하의 소형 장식장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80	13. 사 방 탁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단은 설합, 상단은 3~4층의 선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식품을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코너장이라고도 함.</li> </ul>
81~84	14. 응 접 용 차 탁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기는 가로 세로중 긴쪽을 기준으로 하며 원형은 직경을 기준으로 한다.</li> <li>• 유리판이란 지주가 목재 또는 철재로 되어 있으나 상판이 유리로 되어있는 것을 말한다.</li> </ul>
85	15. 소 형 탁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기, 전기스탠드 등을 올려 놓을 수 있는 탁자를 말함.</li> </ul>
86~96	16. 응 접 용 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접용 의자는 응접용 차탁자에 사용하는 의자로 날개로 조사하며, 카바의 재질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한다.</li> <li>• 1인용 의자에는 양팔걸이 의자, 한팔걸이 의자, 팔걸이 없는 의자, 코너의자등이 있으며, 이를 각각 하나의 단위로 하여 조사한다.</li> <li>• 보조의자는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응접용 의자보다 높이가 낮고 등받이가 없음.</li> </ul>
97	17. 안 락 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나무, 등나무로 만든 것으로 앉는 면이 둥글게 되어 있는 안락의자와 지면과의 접촉면이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흔들의자를 포함한다.</li> </ul>
98~105	18. 책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앉는 책상은 의자없이 사용하는 책상을 말함.</li> </ul>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106~109	19. 책 꽃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책상은 설합이 수평으로 1개 또는 2개 있는 것을 말함.</li> <li>• 편측책상은 평책상보다 한쪽에 하단으로 설합이 2~3개 더 있는 것이며 양측 책상은 평책상보다 좌우하단에 설합이 2~3개 더 있는것을 말함.</li> </ul>
110~113	20. 책 상 용 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상에 고정되어 있는 책꽂이는 책상 1개와 책꽂이 1개로 분리하여 조사한다.</li> <li>• 목재 평의자는 팔걸이가 없는 것을 말함.</li> <li>• 철제 회전식은 좌우로 회전할 수 있는 회전의자를 말함.</li> </ul>
114~115	나. 식 당 용 가 구 21. 식 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원수에 의하지 말고 식탁 자체 크기에 의해 조사할 것.</li> </ul>
116~117	22. 식 탁 용 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탁에 사용하는 의자를 말함.</li> </ul>
118~122	23. 쌀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량식 쌀통은 회사에서 쌀통의 용도만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말함.</li> <li>• 개량식 찬잠검용 쌀통은 쌀통위에 선반이 설치되어 가스레인지나 식기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을 말함.</li> <li>• 재래식 뒤주는 주로 농가에서 사용되며 목재로 되어 있음.</li> </ul>
123	24. 쓰레기 포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안에 비닐이 들어 있어 쓰레기를 넣고 비닐로 묶어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크린에이드”라는 상품명으로 시판되고 있음.</li> </ul>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124	다. 커튼, 카펫트 및 기타 가구 25. 커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문의 크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며, 1평을 조사단위로 한다.</li> <li>1평은 가로, 세로 각 1.82m이며, 1평미만은 반올림한다.</li> </ul>
125	26. 카펫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평을 조사단위로 한다.</li> <li>마루나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카펫트를 조사하며 방에 항상 깔아놓고 사용하는 것과 인조잔디도 카펫트로 취급하여 조사한다.</li> </ul>
126~130	27. 병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풍에는 그림병풍, 자수병풍 모두를 포함한다.</li> <li>폭이란 병풍을 접을 때 접는 개수를 말하며 길이가 1.5자이다.</li> <li>한폭이 3자인 경우에는 2폭으로 하여 조사한다.</li> </ul>
131~133	28. 돛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돛자리에는 왕골, 대나무, 나무구슬, 나일론 등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li> </ul>
134	29. 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름철에 마루문이나 창문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대나무, 모시, 종이, 갈대, 플라스틱, 직물 등으로 만들었음.</li> </ul>
135~137	30. 수족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둥이 쇠로 되어있고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는 어항은 준내구재에서 조사함.</li> </ul>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138	II. TV, 음 향 장 치 가. TV, VTR, 컴퓨터 1. 흑 백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족관에는 조명시설, 산소공급기, 수온조절 장치등 부대시설 모두를 포함시킨다.</li> </ul>
139~152	2. 칼 라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칼라TV는 화면의 크기(인치)에 의하여 구분 조사한다.</li> </ul>
153	3. 실내용 TV안테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제TV의 경우 분류된 인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유사한 인치중 큰쪽으로 조사한다.(예: 12인치→14인치로 조사)</li> <li>TV자체에 부착되어 있는 안테나는 조사하지 않으며, 별도로 구입하여 TV와 선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사한다.</li> </ul>
154	4. TV 보 안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V자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조사하지 않고 별도로 구입하여 TV에 부착하는 것만 조사한다.</li> </ul>
155~157	5. V T 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상품인 TV겸용 VTR도 포함시키며, 리모콘형으로 조사한다.</li> <li>리모콘형은 리모콘 장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li> <li>일반형은 리모콘 장치가 없으며, 음성다중, 예약녹화 기능중 한가지 이상이 있는 것을 말한다.</li> <li>재생 전용은 재생기능만 있는 것을 말한다.</li> </ul>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158~161	6. 개인용 컴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체는 글자판이 있는 부분으로 주기억장치라고도 한다.</li> <li>• 모니터는 화면을 말하며, 흑백과 칼라가 있다.</li> <li>• 보조장치에는 디스켓을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와 인쇄를 할 수 있는 프린터등이 있으며, 이를 각각 한 단위로 하여 조사한다.</li> </ul>
162~163	7. 전자오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연결식은 TV화면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상품명으로 제믹스가 있음.</li> <li>• 이동식이란 이동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계산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전자계산기에 분류한다.</li> </ul>
164~168	나. 음향장치 8. 전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축은 음을 받아들이는 장치(턴테이블,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카세트덱, 릴렉스, 튜너)와 음을 증폭 및 처리하는 장치(앰프, 프리앰프, 이퀄라이저앰프, 씨라운드 프로세서 앰프, 에코믹스 앰프)와 음을 재생하는 장치(스피커)로 구성되어 있음.</li> <li>• 전축은 음을 받아들이는 장치와 증폭 및 처리하는 장치의 갯수를 각각 1단으로 계산하여 조사한다.</li> </ul>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169~170	9. 뮤 직 셴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축의 장치와 구성이 같으나 각 구성요소들이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임.</li> <li>• 고정식은 실내에 설치되어 있어 들고 다닐 수 없으며 구형 전축은 여기에 포함하고 휴대용이란 야외등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을 말함.</li> </ul>
171~174	10. 카 셿 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축의 음을 받아들이는 장치중 턴테이블이 없는 것을 말함.</li> <li>• 녹음 및 재생만 되는 녹음기는 스피커 1개(라디오 있음)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할 것.</li> </ul>
175	11. 뮤 직 밴 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세트 테이프를 이용하여 음악의 반주를 하거나 확성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야외용으로 사용됨.</li> </ul>
176~177	12. 라 디 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탁상용은 주로 실내에서 사용하며, 휴대용보다 큼.</li> </ul>
178	13. 실 내 용 헤드 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용 헤드폰만 조사함.</li> </ul>
179	14. 충 전 기	
	Ⅲ. 가 정 용 기 구	
	가. 냉방기구및공기조절장치	
180~185	1. 에 어 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문형은 재래식으로 소음이 크다.</li> <li>• 벽걸이형은 개량품으로서 전동기가 분리되어 있어 소음이 없음.</li> <li>• 냉난방 겸용은 신제품으로서 냉방과 온방 겸용이므로 여름과 겨울에 사용할 수 있다.</li> </ul>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186~187	2. 선 풍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풍기는 날개직경에 의하여 구분하며 탁상용은 8인치이하로 탁상에 놓고 사용하는 것을 말함.</li> <li>• 벽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날개직경에 의하여 구분한다.</li> </ul>
188	3. 환 풍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문 또는 벽에 부착하여 실내공기를 배출시키는 것</li> </ul>
189	4. 공 기 정 화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풍기에 공기필터가 부착되어 있어 먼지를 걸러낼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li> </ul>
190	5. 레 인 지 후 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레인지위에 설치되어 음식냄새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일종의 환풍장치임.</li> </ul>
	나. 온 방 기 구	
191~194	6. 석 유 난 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 점화식이란 전력에 의한 자동점화 및 송풍기에 의한 연료 분사형을 말하며 이 중 팬형은 환풍기가 내장된 강제순환식임.</li> <li>• 수동식은 심지형으로 성냥불로 점화하는 것임.</li> <li>• 수동식중 입식이란 연소통이 주로 원형으로서 원통형의 유리관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좌식은 주로 4각형으로 입식보다 높이가 낮으며 반사경이 부착되어 있음.</li> </ul>
195	7. 연 탄 난 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실내용으로서 도가니 1개짜리를 말함.</li> </ul>
196~197	8. 전 기 난 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열기(니크롬선)의 갯수에 따라 구분조사한다.</li> </ul>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198	9. 가 스 난 로	•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벽걸이형도 여기에 포함 조사한다.
199~208	다. 냉 장 고 류 10. 냉 장 고	• 용적(ℓ)에 의하여 조사함.
209~210	11. 아 이 스 박 스	• 냉사용으로 쓰이는 것도 포함하며 프라스틱 제품은 스티로폴 제품보다 견고함.
211~212	라. 조리, 주방용 기구 12. 전 기 밥 솥	• 순수하게 밥만 할 수 있는 것
213~214	13. 보 온 밥 통	• 전기를 이용하여 밥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215~216	14. 전 기 보 온 밥 솥	• 밥솥과 밥통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217~222	15. 가 스 레 인 지	• 가스레인지의 버너수에 의해 구분하며 슬림형이란 레인지의 높이가 낮은 것을 말한다.
223~224	16. 가 스 오븐레인지	• 상단은 가스레인지가 있고 하단은 가스오븐 및 그릴(브로일러)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의 높이가 1m 이상되며 상품명으로 매직웨프가 있음.
225	17. 이 동 식 가 스 레 인 지	• 상품명으로 선버너, 부루스타가 있음.
226	18. 프 로 판 가 스 통	• 가스레인지용으로서 20kg들이를 말하며, 모든 프로판 가스통은 '87년 신품 구입으로 처리한다.
227~228	19. 전 자 레 인 지	• 일반형은 음식을 데우는 기능만 있는 것으로 회전식과 고정식이 있으며 다용도형은 빵굽는 것, 생선데우는 것, 발효시키는 것 등의 기능을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229~230	20. 전 기 오 분	<p>갖는 것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빵을 굽는데 사용하는 기구</li> </ul>
231	21. 전 기 곤 로	
232	22. 석 유 곤 로	
233~234	23. 전 기 불 고 기 판	
235~236	24. 전 기 후 라 이 팬	
237~238	25. 전 기 냄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사용하는 것</li> </ul>
239~240	26. 쿠 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를 이용하여 찜이나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li> </ul>
241	27. 토 스 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빵을 구워 토스트를 만드는 것</li> </ul>
242	28. 팝 콘 제 조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팝콘을 만드는 기계</li> </ul>
243~244	29. 믹 서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일, 야채 등을 갈아주는 기계</li> </ul>
245~246	30. 쥬서기 (녹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일, 야채 등을 분쇄하고 즙을 내는 것으로 생즙기라고도 함.</li> </ul>
247~248	31. 믹 서, 쥬 서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믹서와 쥬서의 기능을 갖고 있음.</li> </ul>
249	32. 빙 수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를 이용하여 얼음을 깎아서 빙수를 만드는 기구를 말하며 분쇄기라고도 함.</li> </ul>
250~252	33. 커피 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명 전기포트라고도 하며, 물을 끓이는 기능만 가지고 있다.</li> </ul>
253~254	34. 전 기 보 온 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을 끓이는 기능과 보온기능을 가지고 있다.</li> </ul>
255~258	35. 보 온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호병이라고도 하며, 보온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외부의 재질에 의하여 구분 조사한다.</li> </ul>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259~260	36.에 어 포 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흡포트라고도 하며, 공기의 압축을 이용하여 상단을 누르면 물이 나오는 것.</li> </ul>
261	37.식 기 건 조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를 이용하여 식기의 습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식기 세척기도 여기에 포함함.</li> </ul>
262~263	38.정 수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온정수기란 전기를 이용하여 식수를 정수하는 기구로 별도의 물받이통이 있다.</li> <li>• 정수기는 비전기식이며 수도꼭지에 부착하는 휠타에 의해 식수를 정수하는 것으로 별도의 물받이는 없다.</li> </ul>
264~272	<p>마. 세탁, 청소용 기구</p> 39.세 탁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동식은 하나의 통으로 구성되어 세탁, 탈수, 배수, 행굼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li> <li>• 수동식은 세탁통과 탈수통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작동은 자동으로 되는 것.</li> <li>• 반자동식은 세탁통과 탈수통이 구분되어 있으며 세탁, 배수, 탈수, 행굼의 작동을 각각 하여야 하는 것.</li> </ul>
273~274	40.탈 수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수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상품명으로 짚순이가 있음.</li> </ul>
275	41.의 류 건 조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탁한 옷을 전기를 이용하여 건조시키는 기구</li> </ul>
276~277	42.전 기 청 소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공소제기라고도 함.</li> <li>• 어깨걸이식은 청소용량이 크며 서서 사용할 수 있는 것.</li> </ul>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 손잡이식은 작고 앉아서 사용하며 Handy식 이라고도 함.
278~280	바.재 봉 기 구 43. 재 봉 틀	• 사업용은 제외하고 부업용 및 가정용만 조사한다.
281	44. 편 물 기	• "
282~284	45. 전 기 다 리 미 사.의 료 용 기 구	
285	46. 전 기 안 마 기	
286	47. 전 기 혈 압 계	
287	48. 가 습 기	• 급습기, 초음파가습기라고도 함.
288	49. 축 찜 기	
289	50. 전 기 약 탕 기	
290	51. 전 자 식 살 충 기 아.이.미 용 기 구	• 초음파를 발생하여 벌레를 쫓는 기구
291~292	52. 전 기 드 라 이 어	
293~295	53. 전 기 면 도 기	• 전기 또는 건전기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수동식은 조사 제외됨.
296	54. 전 기 고 데 기	
297	55. 전 기 헤 어 컷 자.조 명 기 구	• 전기를 이용하여 머리카락을 자르는 기계
298~299	56. 산 데 리 아	• 부엌, 화장실, 창고 등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 백열전등은 조사에서 제외되며 주로 거실, 침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중 1개조명 등에 전구가 3개 이상 부착되어 있는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300	57. 전 기 스탠 드 차. 기타 가정용기구	것만을 조사한다.
301~303	58. 전 화 기	• 무선전화기는 전화선이 없이 사용하는 것.
304~305	59. 금 고	• 상점에서 쓰는 소형이동금고는 조사에서 제외하며 대형은 100kg 이상 소형은 100kg미만을 말한다.
306	60. 주 부 저 울	• 부엌에서 사용하는 바늘식의 저울로 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음.
307	61. 체 중 계	• 몸무게를 달 때 사용하는 저울
308~311	62. 온 수 기	• 연탄용은 별도의 물통이 부착되어 있음. • 가스용은 가스를 연료로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스순간온수기라고도 함. • 전기용(상)은 타이머가 있어 심야 전력을 이용하여 물을 데우는 장치임.
312	63.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 가스가 새 경우 경보음을 울리고 가스를 차단시켜 주는 장치
313	64. 잔 디 깎 기 IV. 교양 · 오락 기 구 가. 광 학 기 구	
314~317	1. 카 메 라	• 렌즈분리형은 몸체에서 렌즈를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렌즈부분이 앞으로 나와 있음. • 렌즈일체형중 전자동식은 샷다를 누름과 동시에 거리조절, 노출이 자동으로 조절되며 또한 필름 되감기 자동장치가 있는 것이며 반자동은 위의세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318~319	2. 후 레 쉬	기능중 2가지 기능만 있는 것을 말하며 수동은 거리, 노출 자동장치와 필립피감기 자동장치가 없는 것임.
320~321	3. 삼 각 대	
322	4. 망 원 렌 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줌렌즈, 어안렌즈등 특수렌즈가 있는 경우에는 망원렌즈와 같이 취급하여 각각을 조사한다.</li> </ul>
323	5. 휠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타는 여러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락이 없도록 한다.</li> </ul>
324	6. 쌍 안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운동경기, 관전시 및 야외용으로 사용하며 외안경도 쌍안경과 같이 취급하여 조사한다.</li> </ul>
325	7. 현 미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학습용으로 사용함.</li> </ul>
326	8. 비 디 오 카 메 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TR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나 동일하게 취급한다.</li> </ul>
	나. 악 기	
327~328	9. 피 아 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아노 의자 및 피아노 카바는 피아노에 포함하며 별도 조사하지 않는다.</li> <li>• 그랜드피아노는 뚜껑이 반원형임.</li> </ul>
329	10. 오 르 간	
330	11. 키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키타, 클래식키타는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사하며 전자키타는 영업용이 아닌 경우에만 조사하고 이때는 기타 서양악기에 포함하여 조사한다.</li> </ul>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331	12. 바 이 올 린	
332	13. 멜 로 디 온	• 본체와 호흡통이 직접 연결된 것.
333	14. 멜 로 디 카	• 본체와 호흡통이 호스로 연결된 것.
334	15. 하 모 니 카	
335	16. 크 로 마 하 프	• 소형하프로 들고 연주할 수 있음.
336	17. 실 로 폰	
337	18. 아 코 디 온	
338	19. 리 코 오 더	• 피리의 일종으로 프라스틱으로 되었음.
339	20. 팬 플 룯	• 여러개의 프라스틱관이 수직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호흡에 의하여 악기연주를 하는 것.
340	21. 기 타 서 양 악 기	• 영업용이 아닌 대학생들의 학습용의 트럼펫, 색스폰, 수자폰 등이 있는 경우 각각을 1개로 조사한다.
341	22. 가 야 금	
342	23. 거 문 고	
343	24. 북	
344	25. 장 고	
345	26. 팽 과 리	
346	27. 징	
347	28. 기 타 국 악 기	
	다. 운 동 기 구	
348	29. 종 합 헬 스 기 구	• 턱걸이, 윗몸일으키기, 평행봉 운동 등을 할 수 있는 기구
349	30. 바 이 카	• 실내용 자전거로 고정식으로 되어 있음.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350	31. 러 닝 머 신	• 실내에서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것.
351	32. 로 윙 머 신	• 배를 젓는 운동을 할 수 있게한 것.
352	33. 벨 트 맞 사 지	• 모터가 부착되어 맞사지를 할 수 있는 것.
353	34. 시 드 업	• 주로 윗몸일으키기를 하는 운동기구
354	35. 벤 치 프 레 스	• 누워서 역기를 들 수 있도록 만든 등 받침대
355	36. 역 기	
356	37. 스 키	• 스키, 스키화, 바인딩으로 구성되어 있음.
357	38. 골 프 채	• 골프셀은 우드 4개, 아이론 9개, 푸터 1개를 포함하여 14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날개로 조사한다.
358	39. 탁 구 대	
359	40. 공 기 총	
360	41. 엽 총	
	라. 문 구	
361~362	42. 타 자 기	
363~365	43. 전 자 계 산 기	
	V. 수 송 용 기 구	
	가. 자 전 거	
366~371	1. 자 전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형은 소형 짐받이가 부착되어 있으며 몸체가 검은 색임.</li> <li>• 숙녀용은 시장바구니가 부착되어 있기도 하며, 중·고등학생들이 탈 수 있는 것도 포함.</li> </ul>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372	2. 자전거용 안전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포츠형은 허리를 굽혀서 낮은 자세로 탈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말함.</li> </ul>
373~378	나. 오토바이	
	3. 오토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0CC, 90CC에는 88CC도 포함함.</li> <li>50CC(하)는 자전거형으로 스쿠터라고도 함.</li> </ul>
379	4. 오토바이용 안전모자	
	다. 자동차	
380~405	5. 승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용차는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만 조사하며 사업용은 제외한다.</li> <li>가정용은 사용자의 직업이 봉급이나 월급을 받거나 주부인 경우를 말하며 사업용은 개인택시, 개인사업자, 기업경영자 등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li> </ul>
	<b>Ⅵ. 시계 및 귀금속</b>	
	가. 시계	
406~414	1. 손목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시계는 시계바늘이 없고 숫자판으로 시간을 구분하며 계산기능이 있는 것과 계산기능이 없는 것으로 구분함.</li> <li>학생용은 시계판에 도안, 색깔이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구분함.</li> <li>아동용은 그림시계를 말한다.</li> <li>성인용의 금색, 은색은 시계테의 색깔에 의하여 구분하며 금장, 은장이라고도 함.</li> </ul>
415~416	2. 탁상시계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실 명
417~418	3. 벽 시 계	• 태엽식이든 전지식이든 크기에 따라 구분 조사하며 긴쪽의 길이에(원형은 직경) 의하여 구분한다.
419	4. 회 중 시 계	
	나. 귀 금 속	• 모든 귀금속은 구입상태를 신품으로 한다.
420~422	5. 금	• 반지, 목걸이, 브로치등이 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 1돈 단위로 조사한다.
423~425	6. 백 금	• 1돈 단위로 조사한다.
426~427	7. 은	• 은비너, 은컵, 은주발 등을 1돈 단위로 조사한다.
428~431	8. 은 수 저	• 1벌 단위로 조사한다.

준내구재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I. 침 구 , 수 예 품	
	가. 침 구 류	
1~6	1. 이 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솜이불은 목화솜 이불을 말한다.</li> <li>○ 화학솜이불은 카시미론솜 등으로 된 이불을 말한다.</li> <li>○ 여름용 이불은 누비이불, 모시이불, 삼베이불 등을 말한다.</li> </ul>
7~8	2. 담 요	
9~10	3. 전 기 담 요	○ 전자요라고도 한다.
11~16	4. 요	○ 스펀지요에는 스펀지의 3단요, 4단요를 포함한다.
17~18	5. 전 기 장 판	
19~21	6. 벼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래식벼개는 속이 메밀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li> <li>○ 기타벼개에는 속이 면솜, 화학솜, 스펀지로 된 것과 공기벼개를 포함한다.</li> </ul>
22	7. 방 석	○ 왕골, 나무구슬, 모시, 삼베 및 천 등으로 만든 방석을 포함한다.
23	8. 전 기 방 석	
24	9. 모 기 장	
	나. 수 예 용 품	○ 크기가 가로, 세로중 긴쪽의 크기가 2자 이상인것만 조사한다.
25	10. 쿠 셴	○ 소파용으로 원형, 사각형이 있음.
26	11. 문 감 카 바	○ VTR 카바, 전축카바등이 있는 경우 2자 이상인 것은 문감카바와 동일하게 취급하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II. 의 복	여 각각을 한 단위로하여 조사한다.
	가. 남 자 의 복	의복은 겉옷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7~33	1. 남 자 용 한 복	○ 바지 및 저고리는 한벌을 단위로 조사한다. ○ 겹저고리는 마고자라고도 하며 팔이 있는 것이고 조끼는 팔이 없는 것임.
34~36	2. 신 사 복 상 의	○ 싱글의 상의와 콤비의 상의를 각각 한 단위로 하여 조사한다.
37	3. 남자셔츠및웨타	○ 주로 여름에 겉옷으로 입는 셔츠 및 웨타만 조사하며 신사복 상의나 잠바안에 입는 셔츠 및 웨타는 조사에서 제외한다.
38~40	4. 신 사 복 하 의	
41~42	5. 남자평상복바지	○ 주로 집에서 입는 옷으로 청바지, 골덴바지 등을 말함.
43~46	6. 남자토파, 잠바	○ 여름용의 짧은 팔 잠바는 춘추용에 포함시키며 토파는 겨울용으로 파카라고도 함.
47~50	7. 남자코트, 오바	○ 반코트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51	8. 예비군복(별)	○ 예비군복은 상의, 하의를 합친 한벌단위로 조사한다.
52	9. 넥 타 이	
53	10. 남 자 운 동 복	○ 도복과 추리닝을 포함한다.
54	11. 남 자 수 영 복	
	나. 여 자 의 복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55~61	12. 여 자 용 한 복	○ 치마와 저고리는 한벌을 단위로하여 조사한다. 특히 중고생이 있는 가구는 학생들이 전통예절교육시 입는 옷이 누락이 없도록 한다.
62~69	13. 원 피 스	○ 니트란 직물이 아닌 편물제품을 말한다.
70~77	14. 브 라 우 스	○ 투피스의 상의를 말한다.
78~85	15. 여 자 정 장 상 의	○ 쓰리피스의 상의를 말하며 남자신사복 상의와 유사함.
86	16. 여자셔츠 및 웨타	
87~94	17. 스 커 트	
95~102	18. 여 자 바 지	
103~107	19. 여자토파, 잠바	
108~112	20. 여자코트, 오바	
113	21. 여 자 운 동 복	
114	22. 여 자 수 영 복	○ 1벌단위로 조사하며 원피스식과 투피스식을 각각 1벌로 취급한다.
	다. 학생, 아동, 유아용 의 복	
115~120	23. 남 학 생 의 복	○ 중고등학생의 의복을 조사하며 교복도 포함한다.
121~126	24. 여 학 생 의 복	○ " "
127~135	25. 아 동 복	○ 국민학생의 의복을 조사한다. ○ 상하 연결식이란 상의와 하의가 붙어 있는 것으로 한벌을 단위로하여 조사한다.
136~144	26. 유 아 용 의 복	○ 국민학생이하의 옷으로 속옷은 조사하지 않는다.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Ⅲ. 장 신 구 및 가 방	
	가. 장 신 구 및 우 산 류	
145	1. 가 죽 장 갑	○ 털실장갑, 면장갑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146	2. 지 갑	○ 외출시 사용하는 소형 돈지갑을 말하며 동전지갑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147~148	3. 핸 드 백	○ 천연 파충류가죽은 외부가 악어가죽, 뱀가죽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 기타에는 비닐섬유, 쇠조각장식, 구슬장식, 왕골, 인초등의 천연재료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149	4. 혁 대	○ 예비군혁대 및 직물로 된것은 제외한다.
150~152	5. 목 도 리	○ 스카프, 마후라도 포함한다. ○ 기타 제품에는 털실 및 실크이외의 직물로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153~154	6. 선 그 라 스	○ 금속테, 플라스틱테 모두 포함 조사한다.
155	7. 가 스 라 이 타	○ 휴대용 라이타로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식과 라이타돌식이 모두 포함되며 1회용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156	8. 파 이 프	
157	9. 우 산	○ 비닐우산은 제외
158	10. 양 산	
	나. 가 방 , 신 발 류	
159~161	11. 여 행 용 가 방	○ 대형은 짐을 모두 넣었을때 무게가 무거워 바퀴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있는 정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162~164	12. 서 류 가 방	<p>도의 것을 말하며, 소형은 스포츠용 가방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p> <p>○ 주로 직장인이 서류가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007가방이라고도 함.</p>
165	13. 학 생 가 방	<p>○ 학생들이 책가방으로 사용하는 가방을 말한다.</p>
166~168	14. 남 자 구 두	<p>○ 캐주얼화는 상품명으로 랜드로바가 있음.</p> <p>○ 군화는 예비군이 사용하는 군화를 말하며 현역직업군인, 경찰, 방위병 근무자의 군화는 제외한다.</p>
169~170	15. 여 자 구 두	
171	16. 운 동 화	<p>○ 조깅, 테니스, 축구등의 운동을 할때 신는 신</p>
IV. 식 기 주 방 용 품		
가. 상 , 쟁 반 류		
172~183	1. 밥 상	<p>○ 플라스틱밥상에는 메라닌상, 아크릴상을 포함한다.</p> <p>○ 기타 밥상에는 미장합판으로 만든것을 포함한다.</p>
184~187	2. 찻 상	<p>○ 다과를 운반할 때 사용하는 상으로 밥상보다 소형임.</p>
188~189	3. 쟁 반	<p>○ 자개 및 옷철은 나무에 자개를 입히거나 옷철이나 철기를 한것을 포함한다.</p> <p>○ 기타에는 양은, 스텐레스, 플라스틱제품을 모두 포함 조사한다.</p>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190~191	4. 찬 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외에 나갈때 밥이나 반찬을 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뚜껑이 있는 것과 뚜껑이 없는 것 모두 포함한다.</li> <li>○ 기타에는 양은, 스텐레스, 프라스틱제품을 모두 포함 조사한다.</li> </ul>
192~193	5. 구 절 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가 작은 칸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원칙적으로 아홉칸으로 나누어져 있음.</li> <li>○ 기타에는 양은, 스텐레스, 프라스틱제품을 모두 포함 조사한다.</li> </ul>
	나. 식 기 류	
194	6. 밥그릇(공기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기, 스텐레스, 법랑, 파이렉스, 프라스틱등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li> <li>○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보유하며 여분의 것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li> </ul>
195	7. 대 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기, 스텐레스, 법랑, 파이렉스 모두 포함한다.</li> </ul>
196	8. 접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기, 파이렉스, 유리, 프라스틱 모두 포함한다.</li> </ul>
197	9. 반찬그릇 및 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접보다 소형이며 반찬을 담거나 간장, 고추장등을 담는 것을 말한다.</li> </ul>
198~199	10. 화 채 그 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채를 담는 것을 말하며 냉면그릇도 여기에 포함한다.</li> </ul>
200	11. 커피 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과 잔 받침대를 한개의 조사단위로 한다.</li> </ul>
201	12. 한 식 찻 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식차를 마실때 사용하는 것으로 커피잔</li> </ul>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202~203	13. 술            잔	<p>보다 두께가 두껍고 뚜껑이 있는 것도 있다.</p> <p>○ 양주, 소주, 정종을 마실때 사용하는 술잔을 말하며 기타에는 유리, 사기, 금속제품을 모두 포함 조사하며 맥주잔은 물컵에 분류한다.</p>
204~205	14. 물            컵	○ 물이나 음료수를 마실때 사용하는 것을 조사한다.
206~207	15. 제            기	○ 제사를 지낼때 사용하는 제사전용 그릇 전부를 조사하며, 금속에서 놋쇠, 스텐레스 제품을 포함한다.
208~209	16. 수            저	○ 1벌 단위로 조사한다.
210~211	17. 찻술갈 (티스푼)	
212	18. 포            크	○ 과일용 및 양식용임
	다. 조 리 용    품	
213~217	19. 냄            비	○ 철제에는 테프론 코팅등 철제위에 코팅을 한것을 포함한다.
218~221	20.            술	○ 압력밥솥의 경우 전기식은 내구재 전기밥솥에 분류하고 여기에서 말하는것은 비전기식이다.
222	21. 수 동 식 국 수 틀	
223	22. 수 동 식 분쇄 기	○ 마늘, 고추등 생야채를 잘게 부수는 기구
224	23. 신            선            로	
225	24. 후            라            이            팬	○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조사한다.
226	25. 찜            통	○            "                            "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227	26. 시 루	○ 떡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
228~229	27. 칼	
230~233	28. 주 전 자	○ 대형절구를 말하며, 쇠절구, 나무절구, 돌절구가 전부 포함된다.
234	29. 절 구	
235	30. 양 념 절 구	○ 절구보다 소형으로 마늘이나 깨를 빻는데 사용하는 것
236	31. 멧 돌	○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설거지후에 식기의 건조를 위하여 식기를 올려 놓는 대
237	32. 채	
238	33. 국 자	○ 쌀에서 잡티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치 또는 쟁이라고 함.
239	34. 도 마	
240	35. 주 격	○ 질그릇 약탕기를 말한다.
241	36. 바 가 지	
242	37. 식 기 건조대	○ 과일, 야채를 가는 판
243	38. 키	
244	39. 약 탕 기	○ 재질과는 상관없이 장식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모든 술병
245	40. 강 판 라. 용 기 류	
246	41. 술 병	○ 비전기식으로 밥을 담아 놓는 통
247~249	42. 밥 통	
250~251	43. 바 깨 쓰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252	44. 채 반	
253~254	45. 도 시 락	○ 보온용이란 이중진공도시락을 말함
255~266	46. 김 치 통	○ 냉장고용은 주로 여름에 사용하는 것으로 냉장고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김장용은 가을에 김장할 때 사용하는 것 을 말함.
267~268	47. 향 아 리	
269~271	48. 다 라 이	
272	49. 소 쿠 리	○ 대나무나 싸리나무로 만든것과 플라스틱으 로 만든것을 포함하며, 직경 30cm이상의 것만 조사한다.
	V. 취 미 , 오 락 용 품	
	가. 취 미 , 오 락 용 품	
273~275	1. 꽃 병	○ 사기제품에는 유리제품도 포함함. ○ 수반은 접시형으로 밑면이 넓고 높이가 낮게 되어 있음.
276	2. 아 향	○ 물고기는 조사에서 제외됨.
277	3. 새 장	○ 새는 조사에서 제외됨.
278	4. 개 집	○ 개는 조사에서 제외됨.
279~280	5. 비 디 오 테 이 프	
281	6. 콤팩트 디스크	○ 전축에 바늘없이 사용하는 판
282~283	7. 바 둑 판	○ 1치는 3cm임.
284	8. 나 무 바 둑 알 통	○ 플라스틱 바둑알통은 조사에서 제외됨.
	나. 아 동 용 품	○ 아동용품으로 1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품목에 포함하여 조사할 것.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285	9. 세 발 자 전 거	
286	10. 어 린 이 자 전 거	○ 두발자전거로 뒷부분 양쪽에 보조바퀴가 있는 것.
287	11. 보 행 기	
288	12. 유 모 차	
289	13. 배 비 차	○ 유아용 소형자동차로 실내용임.
290	14. 유 아 용 욕 조	○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며 고정식이 아님
291	15. 편 치 불	
292	16. 건 전 지 용 장 난 감	○ 태엽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하며, 기차, 자동차 등이 있음.
293	17. 불 력 장 난 감	
294~295	18. 인 형	
	다. 운 동 용 품	
296~297	19. 천 막	○ 등산, 낚시등 야외용만 해당됨.
298~300	20. 버 너	○ 조립하여 사용하는 것만 조사함.
301	21. 코 펠	
302	22. 배 낭	○ 색은 조사에서 제외됨.
303~304	23. 야 외 용 침 낭	○ 슬리핑백이라고도 함.
305	24. 야 외 용 돛 자 리	
306	25. 야 외 용 침 대	
307	26. 낚 시 대	○ 한사람이 여러개를 갖고 있으므로 누락이 없도록 한다.
308	27. 릴	○ 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릴대도 갖고 있으므로 누락이 없도록 한다.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309~310	28. 릴 대	
311	29. 고 기 바 구 니	○ 대나무로 된것.
312	30. 등 산 화	
313	31. 스 케 이 트(롱)	
314	32. 스 케 이 트(휘겨)	○ 빙판위에서 무용을 할때 사용하는 것
315	33. 스 케 이 트(하키)	○ 아이스하키를 할때 사용하는 것
316	34. 로 라 스 케 이 트	
317	35. 스 케 이 트 보 드	○ 나무, 플라스틱, 철제 등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바퀴 4개가 있음)
318~320	36. 테 니 스 라 켓	○ 철제, 목제, 플라스틱제품 모두 포함
321	37. 오 리 발	○ 수영을 할때 발에 착용하는 것
322	38. 고 무 보 트	○ 물놀이공, 튜브는 조사에서 제외함.
323	39. 덤 벨	○ 역기와 아령의 중간형태
324	40. 아 령	
325	41. 권 투 글 러 브	○ 어린이용임.
326	42. 야 구 글 러 브	
327	43. 알 미 뇨뿔 야 구 벨	
328	44. 탁 구 벨	
329	45. 배 드 민 턴 라 켓	○ 1개단위로 조사함.
330	46. 축 구 공	
331	47. 농 구 공	
332	48. 배 구 공	
	Ⅵ. 기 타 집 기	
	가. 거실, 침실용집기	
333~335	1. 담 배 함	○ 담배를 넣는 곳과 재떨이가 붙어 있는

품목번호	품 목 구 분	내 용 설 명
336	2. 탁 상 용 라이 타	것을 말하며, 재털이는 조사에서 제외됨.
337	3. 전 화 대	○ 전화를 올려놓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높이가 20cm이하인 것.
338	4. 보 석 합	
339	나. 문 구 류	
339	5. 연 필 깎 기	○ 수동으로 연필을 깎는 것을 말함.
340	6. 앨 범	○ 크기가 20cm×15cm이상인 것만 조사함.
341	7. 제 도 기 구	
342	다. 기 타	
342	8. 구 급 합	○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통
343	9. 빨 래 건 조 대	
344~345	10. 사 다 리	
346	11. 정 원 용 우 산	

## Ⅳ.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제출

### 1. 조사표 내용검토

-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표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잘못 기입된 것이 없나를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일일이 검토한다.
- 만약 누락이나 잘못 기입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가구를 재방문하여 보완한다.

#### 가. 조사표 표지

- 1) 주소가 동·읍·면까지 기입되었는가 확인한다.
- 2) 조사구번호, 집락 및 거처번호, 가구번호가 가구명부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 나. 가구에 관한사항

- 1) 가구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확인한다.
- 2) 가구원수에 방위병, 동거인등의 누락이 없는가 확인한다.
- 3) 가구원의 연령이 만나이로 작성되어 있는가 확인한다.
- 4) 가구주 직업의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확인한다.

#### 다. 거주지 주택에 관한사항

- 1) 6 란 2 항 동거가구의 경우 7~10 란이 사선 처리 되어 있나 확인한다.
- 2) 건축구조의 구분이 정확한가 확인한다.
- 3) 연건평이 주거면적과 병용면적의 합계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 라. 거주지이외 소유 주택

- 1) 거주지이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의 누락이 없는가 확인한다.

2) 11 란 소재지의 행정구역번호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확인한다.

마. 가구소득에 관한사항

1) 소득의 누락이 없는가 확인한다.

2) 월평균소득합계(18 란)가 월평균가구원소득(16 란)의 계와 월평균  
기타소득(17 란)의 합계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바. 내구재

1) 가구원수, 방수에 비하여 옷장등의 수가 적정한가 확인한다.

2) 입식화장대의 경우 화장대용 의자의 누락이 없는가 확인한다.

3) 응접용 차탁자의 경우 응접용 의자의 누락이 없는가 확인한다.

4) 책상의 경우 책꽂이 또는 책상용 의자의 누락이 없는가 확인한다.

5) 식탁의 경우 식탁용의자의 누락 및 가구원수와 적정한가 확인  
한다.

6) 커튼, 카펫트의 경우 평수에 의하여 조사되었는가 확인한다.

7) 가스레인지가 있는 가구의 경우 프로판가스통의 누락이 없는가 확인  
한다.

8) 재봉틀, 편물기의 경우 사업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확인한다.

9) 비디오카메라 보유 가구의 경우 VTR의 누락이 없는가 확인한다.

10) 자동차의 경우 차종 및 cc에 의한 구분이 정확한가 확인한다.

11) 금, 백금의 경우 돈 단위로 조사되었는가 확인한다.

12) 은수저의 경우 벌단위로 조사되었는가 확인한다.

13)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품목이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사. 준내구재

1) 이불, 요, 베키의 경우 가구원수와 적합한가 확인한다.

- 2) 의복의 경우 가구원수 및 가구원의 연령에 비해 적합하고 동거인의 의복이 누락되어 있지 않은가 확인한다.
- 3) 장신구의 경우 출근 및 통학자가 소지하고 다니는 물건의 누락이 없는가 확인한다.
- 4) 식기 주방용품은 가구원수와 비교하여 적합하게 조사되었는가 확인한다.
- 5) 의복의 단위는 개 또는 벌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정확하게 조사되었는가 확인한다.
- 6) 조사대상 가구가 식당등을 경영하는 경우에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식기주방용품이 조사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한다.

## 2. 조사표류 제출

조사표의 내용검토가 끝나면 종합표(2부)를 작성하고, 조사표를 편철하여 지도원에게 제출하며, 동시에 조사원증, 가구명부, 조사구요도등 조사에 사용하던 조사용품을 함께 제출한다.

### 가. 조사표 편철방법

- 1) 동일가구의 내구재 조사표와 준내구재 조사표를 합쳐서 한조로 묶는다.
- 2) 가구별로 한조로 묶은 조사표는 가구번호가 낮은 것이 상단에 오도록 순서대로 정리하여 별도 배부된 표지를 씌어 편철한다. 단, 30가구가 넘는 조사구는 분할하여 2권으로 편철한다.

### 나. 종합표 작성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할 조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종합표 2부
- 2) 조사표
- 3) 사례품 수령증
- 4) 조사원증
- 5) 조사요령서
- 6) 가구 명부
- 7) 조사구 요도

## 연 령 대 조 표

< 부표 1 >

세 는 나 이	간 지	띠	만 연 령			세 는 나 이	간 지	띠	만 연 령		
			양 력 (12.31) 음 력	이 전	이 후				양 력 (12.31) 음 력	이 전	이 후
1	정 묘	토 끼	11.11	0	×	17	신 해	돼 지	11.14	16	15
2	병 인	범	12. 1	1	0	18	경 술	개	12. 4	17	16
3	을 축	소	11.20	2	1	19	기 유	닭	11.23	18	17
4	갑 자	쥐	11.10	3	2	20	무 신	잔나비	11.12	19	18
5	계 해	돼 지	11.28	4	3	21	정 미	양	12. 1	20	19
6	임 술	개	11.17	5	4	22	병 오	말	11.20	21	20
7	신 유	닭	12. 6	6	5	23	을 사	뱀	12. 9	22	21
8	경 신	잔나비	11.25	7	6	24	갑 진	용	11.28	23	22
9	기 미	양	11.13	8	7	25	계 묘	토 끼	11.16	24	23
10	무 오	말	12. 2	9	8	26	임 인	범	12. 5	25	24
11	정 사	뱀	11.21	10	9	27	신 축	소	11.24	26	25
12	병 진	용	11.11	11	10	28	경 자	쥐	11.14	27	26
13	을 묘	토 끼	11.29	12	11	29	기 해	돼 지	12. 2	28	27
14	갑 인	범	11.18	13	12	30	무 술	개	11.21	29	28
15	계 축	소	12. 7	14	13	31	정 유	닭	11.11	30	29
16	임 자	쥐	11.26	15	14	32	병 신	잔나비	11.30	31	30



세 는 나이	간 지	띠	만 연 령			세 는 나이	간 지	띠	만 연 령		
			양 력 (12.31) 음	이 전	이 후				양 력 (12.31) 음	이 전	이 후
33	을미	양	11.18	32	31	49	기묘	토끼	11.21	48	47
34	갑오	말	12. 7	33	32	50	무인	범	11.10	49	48
35	계사	뱀	11.26	34	33	51	정축	소	11.29	50	49
36	임진	용	11.15	35	34	52	병차	쥐	11.18	51	50
37	신묘	토끼	12. 4	36	35	53	을해	돼지	12. 6	52	51
38	경인	범	11.23	37	36	54	갑술	개	11.25	53	52
39	기축	소	11.12	38	37	55	계유	닭	11.15	54	53
40	무자	쥐	12. 2	39	38	56	임신	잔나비	12. 5	55	54
41	정해	돼지	11.20	40	39	57	신미	양	11.23	56	55
42	병술	개	12. 9	41	40	58	경오	말	11.12	57	56
43	을유	닭	11.27	42	41	59	기사	뱀	12. 1	58	57
44	갑신	잔나비	11.17	43	42	60	무진	용	11.20	59	58
45	계미	양	12. 5	44	43	61	정묘	토끼	12. 8	60	59
46	임오	말	11.24	45	44	62	병인	범	11.27	61	60
47	신사	뱀	11.14	46	45	63	을축	소	11.16	62	61
48	경진	용	12. 3	47	46	64	갑자	쥐	12. 6	63	62

세 는 나 이	간 지	띠	만 연 령			세 는 나 이	간 지	띠	만 연 령		
			양 (12.31) 음	력 이전	이후				양 (12.31) 음	력 이전	이후
65	계해	돼지	11.24	64	63	84	갑진	용	11.25	83	82
66	임술	개	11.14	65	64	85	계묘	토끼	11.13	84	83
67	신유	닭	12. 3	66	65	86	임인	범	12. 1	85	84
68	경신	잔나비	11.22	67	66	87	신축	소	11.21	86	85
69	기미	양	11.10	68	67	88	경자	쥐	11.10	87	86
70	무오	말	11.28	69	68	89	기해	돼지	11.29	88	87
71	정사	뱀	11.18	70	69	90	무술	개	11.19	89	88
72	병진	용	12. 7	71	70	91	정유	닭	12. 8	90	89
73	을묘	토끼	11.25	72	71	92	병신	잔나비	11.27	91	90
74	갑인	범	11.15	73	72	93	을미	양	11.16	92	91
75	계축	소	12. 5	74	73	94	갑오	말	12. 5	93	92
76	임자	쥐	11.23	75	74	95	계사	뱀	11.24	94	93
77	신해	돼지	11.12	76	75	96	임진	용	11.13	95	94
78	경술	개	11.30	77	76	97	신묘	토끼	12. 1	96	95
79	기유	닭	11.19	78	77	98	경인	범	11.20	97	96
80	무신	잔나비	12. 9	79	78	99	기축	소	12.10	98	97
81	정미	양	11.27	80	79	100	무자	쥐	11.29	99	98
82	병오	말	11.16	81	80	101	정해	돼지	11.17	100	99
83	을사	뱀	12. 6	82	81						

## 직업분류표

〈부표 2〉

부 호	직업 명	부 호	직업 명
<b>1. 전문, 기술직 종사자</b>		<b>04</b>	<b>항공기 및 선박고급승무원</b>
<b>01</b>	<b>자연과학자 및 관련기술공</b> 화학자, 물리학자, 지질학자, 기상학자, 천문학자, 보조적인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자연과학 기술공		항공기 조종사 및 비행기관사, 선박승무원 및 수로 안내원(선장, 항해사), 선박관리기술자
<b>02</b>	<b>건축 및 공학기술자</b> 건축, 도시계획, 조경, 토목(건물, 도로, 공항, 철도, 교량, 공중위생 시설, 터널, 항만건설 등) 전기 및 전자기술자, 기계기술자(선박, 조선, 항공기, 자동차, 난방기, 환풍기, 냉동기술, 원자력 등) 화학기술자(석유, 비료), 금속기술자, 광산기술자(채탄, 금속, 석유 및 천연개스의 시추기술), 산업경영기술자, 오염공학자, 농업공학기술자, 음료식품공학자, 교통계획전문가, 섬유기술자	<b>05</b>	<b>생명과학자 및 관련기술공</b> 생물(식물, 동물)학자, 세균 및 약물학자(해부, 생리, 의료병리, 가축병리, 축산, 약학자등), 농경학자(원예, 농경, 산림, 토양, 영농지도)
<b>03</b>	<b>건축공학 및 관련기술공</b> 측량기사(토지, 광산, 수로, 사진 등), 제도사(기계, 전기기기, 토목, 건축지도), 토목기술공(측량, 현장기술감독), 전기 및 전자기술공, 기계기술공, 화학기술공, 광산기술공	<b>06</b>	<b>의사, 치과의사 및 수의사</b> 의사(내과, 외과, 보건), 의료보조원,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영양사 및 보건의양사
		<b>07</b>	<b>의사, 치과 및 수의사 관련 종사자</b> 직업간호원 및 조산원, 검안사 및 안경조정사, 의료방사선 기술공, 한의사, 정골요법사(척추지압, 정형기술, 물리요법, 안마사, 침구사)
		<b>08</b>	<b>통계·수학 체계분석가 및 관련 기술공</b> 통계학자, 수학자 및 보험수리사, 체계분석가, 통계 및 수학기술공(전산기 프로그래머등)

부 호	직 업 명	부 호	직 업 명
09	경제학자 경제학자, 경제전문가, 시장조사분석가		악단지휘자, 기악가, 안무가, 무용가, 배우 및 무대감독, 성우, 만담가, 사회자, 제작 연출가, 곡마단 연예인 (곡예사, 마술사, 광대)
11	회계사 회계사, 회계감사원, 세무사	18	체육인 및 관련 종사자 운동선수, 운동코치, 심판
12	법무종사자 변호사 및 검사, 판사, 기타 종사자 (서기, 교도관등)	19	기타 전문기술 및 관련 종사자 사서 기록 보관인, 관리원 (박물관 전시관 등), 사회학자, 인류학자 및 관련 학자 (역사가, 정치학자등), 사회사업자 (복지가, 교양관계종사자, 교회사회사업가등)
13	교원 대학 및 전문교육원, 중·고등·초등·학령전 특수 및 기타 교원 (유치원, 신체장애자교육원, 교육연구원, 장학지도원 등)		인사 및 직업전문가, 언어학자, 번역사 및 통역사, 특히 대리인, 광고대리인, 보험업자, 점성가 및 예언가 (무당) 등 기타 종사자
14	종교관계 종사자 성직자 및 종교교단의 종사자 (선교사, 신앙치료사등)	<b>2. 행정, 관리직 종사자</b>	
15	저작 언론 및 관련작가 저작자, 평론가, 기자, 편집자, 광고문 작성자)	20	입법 및 정부관리직 공무원
16	조각가, 화가, 사진사, 기타 창작 예술가 조각가, 화가, 만화가, 서예가, 도안사, 실내장식가, 사진사 및 촬영사, 사진기자, 영화촬영 감독 및 기타 예술가	21	관리자 총괄 관리자, 생산관리자, 기타 관리자
17	작곡가 및 연예인 작곡가, 음악가, 편곡자, 가수,	<b>3. 사무직 및 관련종사자</b>	
		30	사무원 감독자
		31	정부행정 공무원
		32	속기사, 타자, 카드 및 테이프 천공
		33	경리원, 출납원 및 관련 종사자

부 호	직 업 명	부 호	직 업 명
34	<u>계산기 조직원</u> 기장기 및 계산기 조직원, 자동 자료처리기 조직원	43	<u>기술판매원, 외무판매원 및 제조 업체 판매대리인</u> 기술판매원, 서어비스지도원, 판매 외무원 및 제조업체 판매대리인
35	<u>운수 및 통신사업 감독자</u> 철도역장, 우체국장, 철도업무감독 원, 전신전화국장, 열차조사원, 항 공교통 통제관, 육로운수업무감독 원, 기타 통신사업감독원	44	<u>보험, 부동산, 증권가, 기업서어비 스판매원, 경매 및 감정인</u>
36	<u>교통안내원</u> 여객열차장, 버스 안내원, 케이블 및 연락선 안내원 등	45	<u>판매원, 점원 및 선전원</u> 판매원, 점원 및 선전원, 행사인 및 외판원, 신문팔이
37	<u>우편물 취급 사무원</u> 우편물분류사무원, 집배원, 문서 송달원, 전보분류사무원, 배달원	46	<u>기타 판매종사자</u> 저당업자
38	<u>전화 및 전신기 조직원</u> 전화 조직원, 교환원, 통신사등	<b>5. 서어비스 종사자</b>	
39	<u>기타 사무 및 관련 종사자등</u> 물품관리원(기록, 창고관리, 검수 원),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 원, 문서 및 보고 사무원(보험, 인사, 법무), 안내원 및 여행사 사무원, 도서 및 문서 정리원, 기타 사무원(통계, 인쇄교정등)	50	<u>요식숙박업 관리자</u> 호텔 및 요식점 관리자, 선박사 무장
<b>4. 판매직 종사자</b>		51	<u>요식숙박업 자영자</u> 음식·여관·호텔 자영자, 카바레, 바, 다·과자점 자영자
40	<u>도·소매 관리자</u>	52	<u>가사 및 관련 서어비스 감독자</u> 집사장, 가사장(지배인)
41	<u>도·소매 자영자</u>	53	<u>조리사, 웨이터, 바텐더 및 기타 종사자</u> 조리사, 주방장, 선박 조리사, 웨 이터, 바텐더, 주류접대원
42	<u>판매감독자 및 구매원</u>	54	<u>기타 가정부 및 가사종사자</u> 가정부, 보모, 개인 시중원, 객실 종사원, 호텔 수위, 선실종사원,

부 호	직 업 명	부 호	직 업 명
55	무대의상 담당원 건물관리원, 청소원 및 기타 종사자	63	원예종사자 및 정원사, 농기계 조작원 및 기타 종사자 임업 종사자
56	아파트 관리인, 건물 관리인, 청소원 세탁공	64	별채원, 조림원, 산림 소방원등 기타 임업 종사자 어부, 수렵인 및 관련 종사자 어부, 양식종사자, 해너, 수렵인
57	세탁기 조작공, 드라이크리닝 조작공, 다림질기 조작공 이발사, 미용원 및 기타 종사자	<b>7. 생산직, 운수장비운전자 및 단순 노무자</b>	
58	머리·피부 미용사, 이발사, 무대 분장사, 미조술사, 욕실 종사원, 면도사 보안업무 종사자	70	생산감독자
59	소방원, 화재예방전문가, 경찰관 및 수사관, 청원경찰, 흥신소원, 교도원, 경비원, 수위 기타 서어비스직 종사자	71	광원, 채석원, 굴정원 및 기타 종사자
	안내원, 장의사, 시체 방부처리사, 도박종사원, 간호조수, 약사조수, 여객기 객실 안내원		광원, 채석원, 광물 및 석재처리공, 광산표본수집원, 굴정원 및 천공원, 기타 종사자
<b>6. 농림, 어업 종사자</b>		72	금속가공 처리공
60	농장관리자 및 감독자		금속제련 및 정련로공, 금속압연공, 금속 용해공 및 재가열공, 금속주조공, 금속주형공 및 증차제조공, 금속소둔공, 경화공 및 표면 경화공, 금속인발공 및 압축공, 금속도금공, 주물완성공, 금속세척공, 금속청장공등
61	농업경영자	73	목재가공 종사자 및 제지공
62	농업 및 축산 종사자		목재가공처리공, 건조공, 제재공, 합판제조공, 디자인제재공, 펄프제조·제지공
	일반농업, 전답작물, 채소농업, 과수원, 유사 교·관목 재배, 가축 및 낙농 종사자, 가금 사육,		

부 호	직 업 명	부 호	직 업 명
74	화학물 가공공 및 관련 종사자 파쇄·마쇄공, 혼합기 조작공, 조 제공, 하소공, 열처리공, 여과기 및 분리기 조작공, 증류기 및 반응기 조작공, 정유공, 숯굽기공, 제염공등		제조공, 두부, 생선, 식용유 제조 공
75	방직공, 제작공, 편직공, 염색공 및 관련 종사자 섬유 선별공, 양모 세척공, 혼면 공, 섬유준비공, 방직기 및 편물 기 조정공, 디자인 복사공, 무늬 카드 준비공, 직물검사공, 직물보 수공, 표백공, 염색공 및 섬유제 품 완성공, 정련공, 섬유마전공, 섬유방수처리공	78	담배 제조공 담배 (엽연초 선별, 엽연초 배합 등), 여송연 제조공, 관련 제조 공, 기타 담배 제조공
76	가축처리공 무두질공 및 양피처리공, 원피선 별공, 피혁제조공, 피혁염색 및 광택공, 모피손질공	79	의복 제조, 재봉, 가구 내장공 및 관련 종사자 양복, 양장공, 한복 제조공, 모피 양복공, 제모공, 원형제조공 및 재단공, 재봉공 및 자수공, 가구 내장공 및 천막 제조공, 우산 조립공
77	음식료품 가공 처리공 제분, 제당, 도살, 육류가공, 식품 저장공 (조리, 냉동, 탈수, 염당, 훈제 등) 낙농품 가공 (낙농품 살균, 버터 제조공) 제빵공 및 제과공, 차·커피 및 코코아 조제공, 양조공 및 음료	80	제화공 및 가죽제품 제조공 제화공 및 구두수선공, 구두재단 공, 조립공, 재봉공, 가죽제품제조 공 및 조립공
		81	가구 제조공 및 관련 목공 가구 제조공, 목공기계조작공 (선 반공, 정밀제재공) 목형제조공, 목각공
		82	돌재단공 및 돌조작공 돌재단공, 돌조작공, 석면설계공, 문자조작공
		83	대장공, 공구제작공 및 기계공구 조작공 대장공 및 단야압면기 조작공

부 호	직 업 명	부 호	직 업 명
84	(해머공), 공구제작공, 금속원형 제작공 및 금속정반공, 기계공구 조정조작공, 금속연삭공, 연마공, 공구갈이공, 자물쇠공, 동력절단기 조작공	88	장신구 및 귀금속 세공공
	기계설비공, 기계조립공 및 정밀 기구제작공(전기 제외)	89	보석 연마공, 절단공, 보석부착공, 금·은 세공공
85	기계설비공, 기계조립공, 시계 및 정밀기구제작공, 자동차 정비공, 항공기관정비공, 기타(인쇄기, 섬 유기계, 사무용기계, 자전거 수리 공, 운할유주입공등)		유리성형공, 절단공, 연마공 및 완성공, 도자기 및 연마석 성형 공
	전기설비공 및 관련전기·전자공	90	유리 및 도기가마공, 유리 및 도기철공, 장식공 및 유약제조공 등
86	전자·전기설비공 및 조립공, 라 디오 수리공, 전공(무대·차량 전기기구 수리등) 전신 및 전 화시설공, 케이블 접속공, 전기 및 전자제품검사공	9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공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공, 타이어제조공 및 경화공
	방송 및 음향장비 조작공, 영사 공	92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공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공(종이 상자, 판지라이닝기 조작공, 판지 압착기 조작공, 지대 및 봉투 제조공
87	연관공, 용접공, 판금공, 구조금속 준비공 및 건립공	93	인쇄공 및 관련 종사자
	연관공, 배관공, 용접공, 화염절단 공, 판금공, 구조금속준비 및 건립공		식자공(활자판 작성), 인쇄공, 인쇄조판공, 제본공, 사진 암실 종사자, 사진 인화공, 실크스크 린 인쇄공, 목판인쇄공, 나염공, 등사 필경공, 공판타자원, 등사공 등
			도장공
			건설도장공, 기타 도장공(침책공, 간판 도장, 자동차 도장, 단청공)



부 호	직 업 명	부 호	직 업 명
94	<p>기타 생산 및 관련 종사자</p> <p>악기 제조공 및 조율사, 바구니 세공공 및 솔 제조공(비, 돛자리)</p> <p>콘크리트주조·석면·시멘트·인조 석 제조공, 박제사, 완구 및 인형 제조공, 인장공, 양초 제조공, 사진 필름 및 인화지 제조공, 품질 검사원, 가발원</p>		<p>부두노동자, 화물취급인(철도, 육로, 항공, 선박), 색구공(건설, 선박, 항공) 및 케이블 접속공, 기중장비 운전공, 굴착기 운전공, 불도저, 준설기, 향타기, 정지기 운전공, 콘크리트 혼합기 운전공, 목재 운반차 운전공, 기타 화물취급장비 운전공</p>
95	<p>벽돌공, 목공 및 기타 건설 종사자</p> <p>타일 부착공 및 벽돌공(건축석수, 대리석 부착, 모자이크 재단, 포장공), 철근·콘크리트·시멘트·테라조공, 지붕잇기공, 목공, 소목공(나무제품을 부착, 조립, 장치공), 조각목세공, 미장공, 단열공, 방음공, 유리직공, 도배공, 연통직공, 건물보수원, 발판조립공, 건물해체공, 우물굴착공</p>	98	<p>수송장비 운전사</p> <p>갑판원, 거룻배 선원, 뱃사공, 선박기관실원, 철도기관사 및 화부, 화물열차차장, 신호수 및 전철수, 자동차 운전사, 모터싸이클 운전사, 우마부, 수문조작공, 등대원, 차단기 조작원 등, 기타 수송장비 운전사</p>
96	<p>고정기관 및 관련 장비 운전원</p> <p>발전기 운전원, 공기압축 조작원, 개스압축조작원, 보일러화부, 경수장 운전원, 소각장 운영원, 냉동시설 조작공, 난방 및 환기장치 조작공</p>	99	<p>달리 분류되지 않는 노무자</p>
97	<p>화물취급 및 관련 장비</p>		<p>8. 기 타</p> <p>무 직</p> <p>직업군인</p>

### 행정구역분류번호표

< 부표 3 >

행정구역	분류번호	행정구역	분류번호	행정구역	분류번호	행정구역	분류번호
<b>서울특별시</b>		중 구	2111	남 동 구	2314	남 양 주 군	3132
종 로 구	1111	서 구	2112	북 구	2315	여 주 군	3133
중 구	1112	동 구	2113	서 구	2316	평 택 군	3134
용 산 구	1113	영 도 구	2114	<b>광 주 직 할 시</b>		화 성 군	3135
성 농 구	1114	부 산 진 구	2115	동 구	2411	시 흥 군	3136
동 대 문 구	1115	동 래 구	2116	서 구	2412	파 주 군	3137
중 량 구	1116	남 구	2117	북 구	2413	고 양 군	3138
성 북 구	1117	북 구	2118	광 산 구	2414	광 주 군	3139
도 봉 구	1118	강 서 출 장 소	2119	<b>경 기 도</b>		연 천 군	3140
노 원 구	1119	해 운 대 구	2120	수 원 시	3111	포 천 군	3141
은 평 구	1120	사 하 구	2121	성 남 시	3112	가 평 군	3142
서 대 문 구	1121	금 정 구	2122	의 정 부 시	3113	양 평 군	3143
마 포 구	1122	<b>대 구 직 할 시</b>		안 양 시	3114	이 천 군	3144
양 천 구	1123	중 구	2211	부 천 시	3100	용 인 군	3145
강 서 구	1124	동 구	2212	중 구	3101	안 성 군	3146
구 로 구	1125	서 구	2213	남 구	3102	김 포 군	3147
영 등 포 구	1126	남 구	2214	광 명 시	3116	강 화 군	3148
동 작 구	1127	북 구	2215	송 탄 시	3117	용 진 군	3149
관 악 구	1128	수 성 구	2216	동 두 천 시	3118	<b>강 원 도</b>	
서 초 구	1129	달 서 구	2217	안 산 시	3119	춘 천 시	3211
강 남 구	1130	<b>인 천 직 할 시</b>		과 천 시	3120	원 주 시	3212
송 파 구	1131	중 구	2311	구 리 시	3121	강 릉 시	3213
강 동 구	1132	동 구	2312	평 택 시	3122	동 해 시	3214
<b>부 산 직 할 시</b>		남 구	2313	양 주 군	3131	태 백 시	3215

행정구역	분류번호	행정구역	분류번호	행정구역	분류번호	행정구역	분류번호
속 초 시	3216	괴 산 군	3336	서 산 군	3442	순 천 시	3613
삼 척 시	3217	음 성 군	3337	당 진 군	3443	나 수 시	3614
춘 성 군	3231	충 원 군	3338	아 산 군	3444	여 천 시	3615
홍 천 군	3232	제 원 군	3339	천 원 군	3445	담 양 군	3631
횡 성 군	3233	단 양 군	3340	전 라 북 도		곡 성 군	3632
원 성 군	3234	충 청 남 도		전 주 시	3511	구 례 군	3633
영 월 군	3235	대 전 시	3400	군 산 시	3512	광 양 군	3634
평 창 군	3236	동 구	3401	이 리 시	3513	여 천 군	3635
정 선 군	3237	중 구	3402	정 주 시	3514	승 주 군	3636
철 원 군	3238	서 구	3403	남 원 시	3515	고 흥 군	3637
화 천 군	3239	유 성 출장소	3404	완 주 군	3531	보 성 군	3638
양 구 군	3240	천 안 시	3411	진 안 군	3532	화 순 군	3639
인 제 군	3241	공 주 시	3412	무 주 군	3533	장 흥 군	3640
고 성 군	3242	대 천 시	3413	장 수 군	3534	강 진 군	3641
양 양 군	3243	온 양 시	3414	임 실 군	3535	해 남 군	3642
명 주 군	3244	금 산 군	3431	남 원 군	3536	영 압 군	3643
삼 척 군	3245	대 덕 군	3432	순 창 군	3537	무 안 군	3644
충 청 북 도		연 기 군	3433	정 읍 군	3538	나 수 군	3645
청 주 시	3311	공 주 군	3434	고 창 군	3539	함 평 군	3646
충 주 시	3312	논 산 군	3435	부 안 군	3540	영 광 군	3647
제 천 시	3313	부 여 군	3436	김 제 군	3541	장 성 군	3648
청 원 군	3331	서 천 군	3437	옥 구 군	3542	완 도 군	3649
보 은 군	3332	보 령 군	3438	익 산 군	3543	진 도 군	3650
옥 천 군	3333	청 양 군	3439	전 라 남 도		신 안 군	3651
영 동 군	3334	홍 성 군	3440	목 포 시	3611	광양출장소	3652
진 천 군	3335	예 산 군	3441	여 수 시	3612	경 상 북 도	

행정구역	분류번호	행정구역	분류번호	행정구역	분류번호	행정구역	분류번호
포항시	3711	금릉군	3746	창녕군	3834		
경주시	3712	선산군	3747	밀양군	3835		
김천시	3713	상주군	3748	양산군	3836		
안동시	3714	문경군	3749	울주군	3837		
구미시	3715	예천군	3750	김해군	3838		
영주시	3716	영풍군	3751	의창군	3839		
영천시	3717	봉화군	3752	통영군	3840		
상주시	3718	울진군	3753	거제군	3841		
점촌시	3719	울릉군	3754	고성군	3842		
달성군	3731	<b>경상남도</b>		사천군	3843		
군위군	3732	창원시	3811	남해군	3844		
의성군	3733	울산시	3800	하동군	3845		
안동군	3734	중구	3801	산청군	3846		
청송군	3735	남구	3802	함양군	3847		
영양군	3736	동구	3803	거창군	3848		
영덕군	3737	마산시	3813	합천군	3849		
영일군	3738	진주시	3814	<b>제주도</b>			
월성군	3739	진해시	3815	제주시	3911		
영천군	3740	충무시	3816	서귀포시	3912		
경산군	3741	삼천포시	3817	북제주군	3931		
청도군	3742	김해시	3818	남제주군	3932		
고령군	3743	진양군	3831				
성주군	3744	의령군	3832				
철곡군	3745	함안군	3833				

지정통계 제 111-11-11 호  
작성기관 : 경 제 기 획 원

본 조사표의 기재 내용은 통계법 제 8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제 3 회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가계자산조사표(내구재)

— 1987년 12월 31일기준 —

주 소	조 사 구 번 호	집락 및 거 처 번 호	가 구 번 호
시 구 동 도 시 군 읍 면			

( 조사표 기입상의 유의사항 )

1. 가계자산의 조사대상은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2.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도 남에게 빌린 것은 기입하지 않고, 빌려준 것은 기입합니다. 단, 월부나 외상으로 구입하고 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것도 기입합니다.
3. 농업 및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4. 보석류, 서화, 골동품, 동식물, 신체보조용품 등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5. 파손이나 훼손등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작성년월일	응답자	조사원	지도원
1988년 월 일	가구주의 ( ) (인)	(인)	(인)

경 제 기 획 원

**가구에 관한 사항**

① 가구 구분	1. 농림어가 2. 비농림어가 → 21. 근로자가구      22. 근로자의외 가구						
② 가구 원 수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③ 가구주 연령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				
④ 가구주 직업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말은일의 종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직명 또는 직위)</td> </tr> <tr> <td style="border-top: 1px solid black; padding-top: 5px;">                         1. 전문, 기술직종사자                          2. 행정, 관리직종사자                          3. 사무직 및 관련종사자                          4. 판매직 종사자                          5. 서어비스 종사자                     </td> <td style="border-top: 1px solid black; padding-top: 5px;">                         6. 농림, 어업 종사자                          7. 생산직, 운수장비운전사 및 단순노무자                          8. 기타(무직, 직업군인)                     </td> </tr> </table>			(말은일의 종류)	(직명 또는 직위)	1. 전문, 기술직종사자 2. 행정, 관리직종사자 3. 사무직 및 관련종사자 4. 판매직 종사자 5. 서어비스 종사자	6. 농림, 어업 종사자 7. 생산직, 운수장비운전사 및 단순노무자 8. 기타(무직, 직업군인)
(말은일의 종류)	(직명 또는 직위)						
1. 전문, 기술직종사자 2. 행정, 관리직종사자 3. 사무직 및 관련종사자 4. 판매직 종사자 5. 서어비스 종사자	6. 농림, 어업 종사자 7. 생산직, 운수장비운전사 및 단순노무자 8. 기타(무직, 직업군인)						

**거주지 주택에 관한 사항**

⑤ 주택점유형태	1. 자가                      4. 무상 2. 전세                      5. 임대주택 및 관공사택 3. 월세	
⑥ 거주 구분	1. 자가구                      2. 동거가구 (⑦~⑩란 조사하지않음)	
⑦ 주택의종류	1. 단독주택                      3. 연립주택 2. 아파트                      4.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⑧ 건축구조	1. 철근콘크리트조      4. 목조 2. 철골조                      5. 목골물탈조 3. 연와석조 및      6. 토벽조 블럭조                      7. 간이목골물탈조	
⑨ 연건평 및 대지면적	1. 연건 평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평 → $\left[ \begin{array}{l} \text{주거면적 } \input{type="text"} \text{ 평} \\ \text{비용면적 } \input{type="text"} \text{ 평} \end{array} \right.$ 2. 대지면적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평	
⑩ 신축년도	<input type="text"/> 1 <input type="text"/> 9 <input type="text"/> 년	



내 구 재

품목 번호	품 목 명	㉑ 취 득 시 기 및 수 량						㉒ 취 득 상 태	
		87	86	85	84~83	82~78	77이전	1. 신 품	2. 중 고 품
	I. 가 구								
	1. 양 복 장								
1	○ 티크장 (3자)							1	2
2	○ " (4자)							1	2
3	○ " (5자)							1	2
4	○ " (6자)							1	2
5	○ " (7자)							1	2
6	○ " (8자)							1	2
7	○ " (9자)							1	2
8	○ " (10자)							1	2
9	○ " (11자이상)							1	2
10	○ 칠기자개장 (3자)							1	2
11	○ " (4자)							1	2
12	○ " (5자)							1	2
13	○ " (6자)							1	2
14	○ " (7자)							1	2
15	○ " (8자)							1	2
16	○ " (9자)							1	2
17	○ " (10자)							1	2
18	○ " (11자이상)							1	2
19	○ 호마이카장 (3자)							1	2
20	○ " (4자)							1	2
21	○ " (5자)							1	2
22	○ " (6자)							1	2
								1	2



품목 번호	품 목 명	①9 취득 시기 및 수 량						②0 취득상태	
		87	86	85	84~83	82~78	77이전	1. 신 품	2. 중고품
23	○호마이카장 (7자)							1	2
24	○ // (8자)							1	2
25	○ // (9자)							1	2
26	○ // (10자)							1	2
27	○ // (11자이상)							1	2
28	○철 제 장 (3자이하)							1	2
29	○ // (4자이상)							1	2
30	○한 식 장 (3자이하)							1	2
31	○ // (4자이상)							1	2
32	2. 아 동 용 옷 장							1	2
33	3. 간 이 양 복 장							1	2
	4. 설 합 장								
34	○티 크 (6단 )							1	2
35	// (5단 )							1	2
36	// (4단 )							1	2
37	// (3단 )							1	2
38	// (2단 )							1	2
39	○호마이카 (6단 )							1	2
40	// (5단 )							1	2
41	// (4단 )							1	2
42	// (3단 )							1	2
43	// (2단 )							1	2
	5. 침 대								
44	○철 제 (1인용)							1	2
								1	2

품목 번호	품 목 명	⑲ 취 득 시 기 및 수 량						⑳ 취득상태	
		87	86	85	84~83	82~78	77이전	1. 신 품	2. 중고품
45	○철 제 (2인용)							1	2
46	○목 제 (1인용)							1	2
47	○ // (2인용)							1	2
48	○아동용침대 (1 층)							1	2
49	○ // (2 층)							1	2
	6. 화 장 대								
50	○티 크 (좌 식)							1	2
51	○ // (입 식)							1	2
52	○철 기 자 개 (좌 식)							1	2
53	○ // (입 식)							1	2
54	○호 마이 카 (좌 식)							1	2
55	○ // (입 식)							1	2
56	7. 화 장 대 용 의 자							1	2
	8. 거 울								
57	○소 형							1	2
58	○중 형							1	2
59	○대 형							1	2
	9. 입 식 옷 걸 이								
60	○목 제							1	2
61	○철 제							1	2
	10. 문 갑								
62	○티 크 (3자)							1	2
63	○ // (4자)							1	2
64	○ // (5자이상)							1	2
								1	2

품목 번호	품 목 명	㉑ 취 득 시 기 및 수 량						㉒ 취 득 상 태	
		87	86	85	84~83	82~78	77이전	1. 신 품	2. 중 고 품
65	○칠기자개(3자)							1	2
66	○ " (4자)							1	2
67	○ " (5자이상)							1	2
	11. 책 장 , 장 식 장								
68	○티 크(3자이하)							1	2
69	○ " (4자)							1	2
70	○ " (5자이상)							1	2
71	○호마이카(3자이하)							1	2
72	○ " (4자이상)							1	2
73	○칠기자개(3자이하)							1	2
74	○ " (4자이상)							1	2
75	○철제(2자이하)							1	2
76	○ " (3자이상)							1	2
	12. 장 식 대								
77	○2자이하							1	2
78	○3자							1	2
79	○4자이상							1	2
80	13. 사 방 탁 자							1	2
	14. 응 접 용 차 탁 자								
81	○목제판(2자)							1	2
82	○ " (3자이상)							1	2
83	○유리판(2자)							1	2
84	○ " (3자이상)							1	2
85	15. 소 형 탁 자							1	2
								1	2

품목 번호	품 목 명	㉑ 취 득 시 기 및 수 량						㉒ 취 득 상 태	
		87	86	85	84~83	82~78	77이전	1. 신 품	2. 중 고 품
	16. 응 접 용 의 자								
86	○ 천 (3인용)							1	2
87	○ // (2인용)							1	2
88	○ // (1인용)							1	2
89	○ // (보조의자)							1	2
90	○ 인조가죽(3인용)							1	2
91	○ // (2인용)							1	2
92	○ // (1인용)							1	2
93	○ // (보조의자)							1	2
94	○가 가죽(3인용)							1	2
95	○ // (2인용)							1	2
96	○ // (1인용)							1	2
97	17. 안 락 의 자							1	2
	18. 책 상								
98	○ 철 제 (앉는책상)							1	2
99	○ // (평 책 상)							1	2
100	○ // (편측책상)							1	2
101	○ // (양측책상)							1	2
102	○ 목 제 (앉는책상)							1	2
103	○ // (평 책 상)							1	2
104	○ // (편측책상)							1	2
105	○ // (양측책상)							1	2
	19. 책 껍 이								
106	○ 목 제(1 단)							1	2
								1	2

품목 번호	품 목 명	①9 취득 시기 및 수 량						②0 취득상태	
		87	86	85	84~83	82~78	77이전	1. 신 품	2. 중고품
107	○ 목 제 ( 2 단 이상 )							1	2
108	○ 철 제 ( 1 단 )							1	2
109	○ " ( 2 단 이상 )							1	2
	20. 책 상 용 의 자								
110	○ 목 제 ( 평 의 자 )							1	2
111	○ " ( 팔 걸 이 의 자 )							1	2
112	○ 철 제 ( 고 정 식 )							1	2
113	○ " ( 회 전 식 )							1	2
	21. 식 탁								
114	○ 5 인 용 이 하							1	2
115	○ 6 인 용 이 상							1	2
	22. 식 탁 용 의 자								
116	○ 팔 걸 이 있 는 것							1	2
117	○ 팔 걸 이 없 는 것							1	2
	23. 쌀 통								
118	○ 개 량 식 쌀 통 ( 80kg )							1	2
119	○ " ( 60kg )							1	2
120	○ " ( 30 kg 이하 )							1	2
121	○ 개 량 식 찬 장 겸 용 쌀 통							1	2
122	○ 재 래 식 뒤 주							1	2
123	24. 쓰 레 기 포 장 기							1	2
124	25. 커 튠 ( 평 )							1	2
125	26. 카 펫 트 ( 평 )							1	2
	27. 병 풍								
								1	2

품목 번호	품 목 명	㉑ 취 득 시 기 및 수 량						㉒ 취 득 상 태	
		87	86	85	84~83	82~78	77이전	1. 신 품	2. 중 고 품
126	○ 2 폭							1	2
127	○ 4 폭							1	2
128	○ 6 폭							1	2
129	○ 8 폭							1	2
130	○ 10 폭 이 상							1	2
	28. 돛 자 리								
131	○ 왕 골							1	2
132	○ 대 나 무							1	2
133	○ 기 타							1	2
134	29. 발							1	2
	30. 수 족 관								
135	○ 3 자 이 하							1	2
136	○ 4 자							1	2
137	○ 5 자 이 상							1	2
	II. TV, 음 향 장 치								
138	1. 흑 백 TV							1	2
	2. 칼 라 TV								
139	○ 5 인 치							1	2
140	○ 9 인 치							1	2
141	○ 14" (리 모 콘)							1	2
142	○ // (버 튼 식)							1	2
143	○ // (로 타 리 식)							1	2
144	○ 16", 15" (리 모 콘)							1	2
145	○ // (버 튼 식)							1	2
								1	2

품목 번호	품 목 명	㉑ 취 득 시 기 및 수 량						㉒ 취 득 상 태	
		87	86	85	84~83	82~78	77이전	1. 신 품	2. 중 고 품
146	○ 16', 15'(로타리식)							1	2
147	○ 18', 20'(리 모 콘)							1	2
148	○ // (버튼식)							1	2
149	○ // (로타리식)							1	2
150	○ 26', 28'(리 모 콘)							1	2
151	○ // (버튼식)							1	2
152	○ 45 인 치							1	2
153	3. 실내용 TV 안테나							1	2
154	4. TV 보 안 경							1	2
	5. V T R								
155	○ 리 모 콘							1	2
156	○ 일 반 형							1	2
157	○ 재 생 전 용							1	2
	6. 개인용 컴퓨터								
158	○ 본 체							1	2
159	○ 모 니 터(흑백)							1	2
160	○ // (칼라)							1	2
161	○ 보 조 장 치							1	2
	7. 전 자 오 락 기								
162	○ TV 연 결 식							1	2
163	○ 이 동 식							1	2
	8. 전 축								
164	○ 7 단 이 상							1	2
165	○ 6 단							1	2
								1	2

품목 번호	품 목 명	⑲ 취 득 지 기 및 수 량						⑳ 취 득 상 태	
		87	86	85	84~83	82~78	77이전	1. 신 품	2. 중 고 품
166	○ 5 단							1	2
167	○ 4 단							1	2
168	○ 3 단 이 하							1	2
	9 뮤 직 센 타								
169	○ 고 정 식							1	2
170	○ 이 동 식 (휴대용)							1	2
	10. 카 셋 트								
171	○ 스피커 2개, 더블데크형							1	2
172	○ 스피커 2 개							1	2
173	○ 스피커 1 개 (라디오 있음)							1	2
174	○ 스피커 1 개 (라디오 없음)							1	2
175	11. 뮤 직 밴 드							1	2
	12. 라 디 오								
176	○ 탁 상 용							1	2
177	○ 휴 대 용							1	2
178	13. 실 내 용 헤 드 폰							1	2
179	14. 층 전 기							1	2
	Ⅲ. 가 정 용 기 구								
	1. 에 어 콘								
180	○ 창문형(5평이하)							1	2
181	○ " (6평~10평)							1	2
182	○ " (11평이상)							1	2
183	○ 벽걸이형(5평이하)							1	2
184	○ 벽걸이형(6평이상)							1	2
								1	2



품목 번호	품 목 명	㉑ 취 득 시 기 및 수 량						㉒ 취 득 상 태	
		87	86	85	84~83	82~78	77이전	1. 신 품	2. 중고품
185	○냉 난 방 겸 용							1	2
	2. 선 풍 기								
186	○탁 상 용							1	2
187	○일 반 용							1	2
188	3. 환 풍 기							1	2
189	4. 공 기 정 화 기							1	2
190	5. 래 인 지 후 드							1	2
	6. 석 유 난 로								
191	○자동점화식(팬형)							1	2
192	○ // (일반형)							1	2
193	○수 동 식(입식)							1	2
194	○ // (좌식)							1	2
195	7. 연 탄 난 로							1	2
	8. 전 기 난 로								
196	○발 열 기 1 개							1	2
197	○발 열 기 2 개 이 상							1	2
198	9. 가 스 난 로							1	2
	10. 냉 장 고								
199	○ 500ℓ 이 상							1	2
200	○ 420ℓ ~ 490ℓ							1	2
201	○ 320ℓ ~ 410ℓ							1	2
202	○ 260ℓ ~ 310ℓ							1	2
203	○ 230ℓ ~ 250ℓ							1	2
204	○ 200ℓ ~ 220ℓ							1	2
								1	2

품목 번호	품 목 명	①9 취 득 시 기 및 수 량						②취득상태	
		87	86	85	84~83	82~78	77이전	1. 신 품	2. 중고품
205	○ 180ℓ ~ 190ℓ							1	2
206	○ 130ℓ ~ 170ℓ							1	2
207	○ 100ℓ ~ 120ℓ							1	2
208	○ 90ℓ 이 하							1	2
	11. 아 이 스 박 스								
209	○ 프 라 스틱 제 품							1	2
210	○ 스 치 로 폴 제 품							1	2
	12. 전 기 밥 솥								
211	○ 국 산							1	2
212	○ 외 국 산							1	2
	13. 보 온 밥 통								
213	○ 국 산							1	2
214	○ 외 국 산							1	2
	14. 전 기 보 온 밥 솥								
215	○ 국 산							1	2
216	○ 외 국 산							1	2
	15. 가 스 레 인 지								
217	○ 버너 1개, 슬림형							1	2
218	○ 버너 1개							1	2
219	○ 버너 2개 (슬림형)							1	2
220	○ // (그릴있음)							1	2
221	○ // (그릴없음)							1	2
222	○ 버너 4개							1	2
	16. 가 스 오븐 레 인 지								
								1	2

품목 번호	품 목 명	⑲ 취 득 시 기 및 수 량						⑳ 취 득 상 태	
		87	86	85	84~83	82~78	77이전	1. 신 품	2. 중 고 품
223	○ 2 버 너							1	2
224	○ 4 버 너							1	2
225	17. 이 동 식 가 스 레 인 지							1	2
226	18. 프 로 판 가 스 동							1	2
	19. 전 자 레 인 지								
227	○ 일 반 형							1	2
228	○ 다 용 도 형							1	2
	20. 전 기 오 본								
229	○ 국 산							1	2
230	○ 외 국 산							1	2
231	21. 전 기 콘 로							1	2
232	22. 석 유 콘 로							1	2
	23. 전 기 불 고 기 판								
233	○ 국 산							1	2
234	○ 외 국 산							1	2
	24. 전 기 후 라 이 팬								
235	○ 국 산							1	2
236	○ 외 국 산							1	2
	25. 전 기 냄 비								
237	○ 국 산							1	2
238	○ 외 국 산							1	2
	26. 쿠 커								
239	○ 국 산							1	2
240	○ 외 국 산							1	2
								1	2

품목 번호	품 목 명	①9 취 득 시 기 및 수 량						②0 취 득 상 대	
		87	86	85	84~83	82~78	77이전	1. 신 품	2. 중 고 품
241	27. 토 스 터							1	2
242	28. 팜 콘 제 조 기							1	2
	29. 믹 서 기								
243	○국 산							1	2
244	○외 국 산							1	2
	30. 쥬서기(녹즙기)								
245	○국 산							1	2
246	○외 국 산							1	2
	31. 믹 서 · 쥬 서 기								
247	○국 산							1	2
248	○외 국 산							1	2
249	32. 빙 수 기							1	2
	33. 커피 포트								
250	○국 산 (알루미늄)							1	2
251	○ // (스텐레스)							1	2
252	○외 국 산							1	2
	34. 전 기 보 온 포 트								
253	○국 산							1	2
254	○외 국 산							1	2
	35. 보 온 병								
255	○대 형 (스텐레스)							1	2
256	○ // (프라스틱)							1	2
257	○소 형							1	2
258	○외 국 산							1	2
								1	2

품목 번호	품 목 명	㉑ 취 득 시 기 및 수 량						㉒ 취 득 상 태	
		87	86	85	84~83	82~78	77이전	1. 신 품	2. 중 고 품
	36. 에 어 포 트								
259	○ 국 산							1	2
260	○ 외 국 산							1	2
261	37. 식 기 건 조 기							1	2
	38. 정 수 기								
262	○ 이 온 정 수 기							1	2
263	○ 정 수 기							1	2
	39. 세 탁 기								
264	○ 전자동식 (4kg미만)							1	2
265	○ // ( 4 kg 이상 )							1	2
266	○ 반자동식(3 kg 미만)							1	2
267	○ // ( 3.0 kg ~ 3.9 kg )							1	2
268	○ // ( 4 kg 이 상 )							1	2
269	○ 수동식 ( 3 kg 미만 )							1	2
270	○ // ( 3.0 kg ~ 3.5 kg )							1	2
271	○ // ( 3.6 kg ~ 4.0 kg )							1	2
272	○ // ( 4.1 kg 이 상 )							1	2
	40. 탈 수 기								
273	○ 5 kg 미 만							1	2
274	○ 5 kg 이 상							1	2
275	41. 의 류 천 조 기							1	2
	42. 전 기 청 소 기								
276	○ 어 깨 걸 이 식							1	2
277	○ 손 잡 이 식							1	2
								1	2

품목 번호	품 목 명	①9 취 득 시 기 및 수 량						②0 취 득 상 태	
		87	86	85	84~83	82~78	77이전	1. 신 품	2. 중 고 품
	43. 재 봉 틀								
278	○손 틀 식							1	2
279	○발 틀 식							1	2
280	○전 기 모 타 식							1	2
281	44. 편 물 기							1	2
	45. 전 기 다 리 미								
282	○국 산 (일반형)							1	2
283	○국 산 (스팀형)							1	2
284	○외 국 산							1	2
285	46. 전 기 안 마 기							1	2
286	47. 전 기 혈 압 계							1	2
287	48. 가 습 기							1	2
288	49. 쥘 찜 기							1	2
289	50. 전 기 약 탕 기							1	2
290	51. 전 자 식 살 충 기							1	2
	52. 전 기 드 라 이 어								
291	○국 산							1	2
292	○외 국 산							1	2
	53. 전 기 면 도 기								
293	○국 산 (전전지용)							1	2
294	○ " (전 기 용)							1	2
295	○외 국 산							1	2
296	54. 전 기 고 태 기							1	2
297	55. 전 기 헤 어 컷							1	2
								1	2

품목 번호	품 목 명	①9 취득 시기 및 수 량						②0 취득상태	
		87	86	85	84~83	82~78	77이전	1. 신 품	2. 중고품
	56. 산 데 리 아								
298	○유 리							1	2
299	○크 리 스 탈							1	2
300	57. 전 기 스 탠 드							1	2
	58. 전 화 기								
301	○무 선 전 화 기							1	2
302	○버 튠 식							1	2
303	○다 이 알 식							1	2
	59. 금 고								
304	○대 형							1	2
305	○소 형							1	2
306	60. 주 부 저 울							1	2
307	61. 체 중 계							1	2
	62. 온 수 기								
308	○연 탄 용							1	2
309	○가 스 용							1	2
310	○전 기 용 ( 상 )							1	2
311	○ // ( 하 )							1	2
312	63.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1	2
313	64. 잔 디 꺾 기							1	2
	Ⅳ. 교 양 , 오 락 기 구								
	1. 카 메 라								
314	○렌 즈 분 리 형							1	2
315	○렌즈일체형(전자동)							1	2
								1	2

품목 번호	품 목 명	⑲ 취 득 시 기 및 수 량						⑳ 취 득 상 태	
		87	86	85	84~83	82~78	77이전	1. 신 품	2. 중 고 품
316	○렌즈일체형 (반자동)							1	2
317	○ " (수동)							1	2
	2. 후 레 쉬								
318	○국 산							1	2
319	○외 국 산							1	2
	3. 삼 각 대								
320	○국 산							1	2
321	○외 국 산							1	2
322	4. 망 원 렌 즈							1	2
323	5. 촬 영 타							1	2
324	6. 쌍 안 경							1	2
325	7. 현 미 경							1	2
326	8. 비 디 오 카 메 라							1	2
	9. 피 아 노								
327	○그 랜 드 피 아 노							1	2
328	○일 반 형							1	2
329	10. 오 르 간							1	2
330	11. 키 타							1	2
331	12. 바 이 올 린							1	2
332	13. 멜 로 디 온							1	2
333	14. 멜 로 디 카							1	2
334	15. 하 모 니 카							1	2
335	16. 크 로 마 하 프							1	2
336	17. 실 로 폰							1	2
								1	2



품목 번호	품 목 명	㉑ 취득 시기 및 수량						㉒ 취득상태	
		87	86	85	84~83	82~78	77이전	1. 신 품	2. 중고품
337	18. 아 코 디 온							1	2
338	19. 리 코 오 더							1	2
339	20. 팬 플 릿							1	2
340	21. 기 타 서 양 악 기							1	2
341	22. 가 야 금							1	2
342	23. 거 문 고							1	2
343	24. 북							1	2
344	25. 장 고							1	2
345	26. 팽 과 리							1	2
346	27. 징							1	2
347	28. 기 타 국 악 기							1	2
348	29. 종 합 헬 스 기 구							1	2
349	30. 바 이 카							1	2
350	31. 러 닝 머 신							1	2
351	32. 로 워 링 머 신							1	2
352	33. 벨 트 맞 사 지							1	2
353	34. 시 드 업							1	2
354	35. 벤 치 프 레 스							1	2
355	36. 역 기							1	2
356	37. 스 키							1	2
357	38. 골 프 채							1	2
358	39. 탁 구 대							1	2
359	40. 공 기 총							1	2
360	41. 엽 총							1	2
								1	2

품목 번호	품 목 명	①9 취 득 시 기 및 수 량						②0 취 득 상 태	
		87	86	85	84~83	82~78	77이전	1. 신 품	2. 중 고 품
	42. 타 자 기								
361	○한글 또는영문타자기							1	2
362	○한글, 영문겸용							1	2
	43. 전 자 계 산 기								
363	○휴대용(국산)							1	2
364	○휴대용(외국산)							1	2
365	○탁상용							1	2
	V. 수 송 용 기 구								
	1. 자 전 거								
366	○표준형							1	2
367	○신사용(기아있는것)							1	2
368	○신사용(기아없는것)							1	2
369	○속녀용							1	2
370	○스포츠형(기아있는것)							1	2
371	○ // (기아없는것)							1	2
372	2. 자전거용안전모자							1	2
	3. 오 토 바 이								
373	○ 250 CC							1	2
374	○ 125 CC							1	2
375	○ 100 CC							1	2
376	○ 80 CC, 90 CC							1	2
377	○ 50 CC (상)							1	2
378	○ 50 CC (하)							1	2
379	4. 오토바이용안전모자							1	2
								1	2

품목 번호	품 목 명	㉓ 취 득 시 기 및 수 량						㉔ 취 득 상 대	
		87	86	85	84~83	82~78	77이전	1. 신 품	2. 중 고 품
	5. 승 용 차								
380	○그랜저 (2,000 CC)							1	2
381	○콩코드 (2,000 CC)							1	2
382	○소나타 (2,000 CC)							1	2
383	○ " (1,800 CC)							1	2
384	○로얄(2,000CC자동)							1	2
385	○ " (2,000CC수동)							1	2
386	○ " (1,900 CC)							1	2
387	○ " (1,500CC자동)							1	2
388	○ " (1,500CC수동)							1	2
389	○스텔라(1,500CC자동)							1	2
390	○ " (1,500CC수동)							1	2
391	○르망(1,500CC자동)							1	2
392	○ " (1,500CC수동)							1	2
393	○프레스토(1,500CC자동)							1	2
394	○ " (1,500CC수동)							1	2
395	○맵시나 (1,500 CC)							1	2
396	○엑셀(1,500CC자동)							1	2
397	○ " (1,500CC수동)							1	2
398	○ " (1,300 CC)							1	2
399	○포니 (1,400 CC)							1	2
400	○프라이드 (1,300 CC)							1	2
401	○ " (1,100 CC)							1	2
402	○기타차량 (1,000CC ~1,300CC)							1	2
								1	2

품목 번호	품 목 명	⑲ 취 득 시 기 및 수 량						⑳ 취 득 상 태	
		87	86	85	84~83	82~78	77이전	1. 신 품	2. 중 고 품
403	○기타차량(1,500 ~ 1,700 CC)							1	2
404	○ " (1,900CC이상)							1	2
405	○외 국 산 자 동 차							1	2
	Ⅵ. 시 계 및 귀 금 속								
	1. 손 목 시 계								
406	○전자시계(계산기능있음)							1	2
407	○ " (계산기능없음)							1	2
408	○학생용 (색깔없음)							1	2
409	○ " (색깔있음)							1	2
410	○아 동 용							1	2
411	○남자성인용 (금색)							1	2
412	○ " (은색)							1	2
413	○여자성인용 (금색)							1	2
414	○ " (은색)							1	2
	2. 탁 상 시 계								
415	○금 속 태							1	2
416	○프 라 스 탁 태							1	2
	3. 벽 시 계								
417	○벽걸이형(50cm 미만)							1	2
418	○ " (50cm 이상)							1	2
419	4. 회 중 시 계							1	2
	5. 금(돈)								
420	○ 24 금							1	2
421	○ 18 금							1	2
								1	2

품목 번호	품 목 명	㉑ 취 득 시 기 및 수 량						㉒ 취 득 상 태	
		87	86	85	84~83	82~78	77이전	1. 신 품	2. 중 고 품
422	○ 14 금							1	2
	6. 백 금 (돈)								
423	○ 백 금 (99%)							1	2
424	○ " (75%)							1	2
425	○ " (50%)							1	2
	7. 은 (돈)								
426	○ 은 (99%)							1	2
427	○ " (70%)							1	2
	8. 은 수 저 (별)								
428	○ 어른용 (99%)							1	2
429	○ " (70%)							1	2
430	○ 아동용 (99%)							1	2
431	○ " (70%)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지정통계 제 111-11-11 호  
작성기관: 경제기획원

본 조사표의 기재 내용은 통계법 제 8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제 3 회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가계자산조사표(준내구재)

— 1987년 12월 31일기준 —

주 소	조사구번호	집락 및 거처 번 호	가구번호
시 구 동 도 시 읍 읍면			

(조사표 기입상의 유의사항)

1. 가계자산의 조사대상은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2.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도 남에게 빌린 것은 기입하지 않고, 빌려준 것은 기입합니다. 단, 월부나 외상으로 구입하고 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것도 기입합니다.
3. 농업 및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4. 보석류, 서화, 골동품, 동식물, 신체보조용품등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5. 파손이나 훼손등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작성년월일	응답자	조사원	지도원
1988년 월 일	가구주의 ( ) (인)	(인)	(인)

경 제 기 획 원

**가구에 관한 사항**

① 가구 구분	1. 농림어가 2. 비농림어가 → 21. 근로자가구    22. 근로차외 가구		
② 가구 원 수	<input type="text"/> 명	③ 가구주연령	만 <input type="text"/> 세
④ 가구주 직업	(말은일의 종류)                          (직명 또는 직위) <hr/> 1. 전문, 기술직종사자                  6. 농림, 어업 종사자 2. 행정, 관리직종사자                7. 생산직, 운수장비운전사 3. 사무직 및 관련종사자              및 단순노무자 4. 판매직 종사자                      8. 기타(무직, 직업군인) 5. 서어비스 종사자		

**거주지 주택에 관한 사항**

⑤ 주택접유형태	1. 자가                          4. 무상 2. 전세                        5. 임대주택 및 관공사택 3. 월세
⑥ 거주 구분	1. 주거구                    2. 동거가구 (⑦~⑩란 조사하지않음)
⑦ 주택의 종류	1. 단독주택                3. 연립주택 2. 아파트                    4.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⑧ 건축구조	1. 철근콘크리트조    4. 목    조 2. 철    골    조        5. 목골물탈조 3. 연와석조 및     6. 토    벽    조 블럭조                7. 간이목골물탈조
⑨ 연 건 평 및 대 지 면 적	1. 연 건 평 <input type="text"/> 평 → { 주거면적 <input type="text"/> 평 { 병용면적 <input type="text"/> 평 2. 대 지 면 적 <input type="text"/> 평
⑩ 신 축 년 도	<input type="text"/> 1 <input type="text"/> 9 <input type="text"/> 년





준비구재

품목 번호	품 목 명	①9 취득시기 및 수량		품 목 번호	품 목 명	①9 취득시기 및 수량	
		계	87구입			계	87구입
	I. 침구, 수예품			19	○오 리 털		
	1. 이 불			20	○재 래 식		
1	○겨울용( 솜 )			21	○기 타		
2	○ // (화학솜)			22	7. 방 석		
3	○ // (오리털)			23	8. 전 기 방 석		
4	○여 름 용			24	9. 모 기 장		
5	○유아용( 솜 )			25	10. 쿠 선		
6	○ // (화학솜)			26	11. 문 갑 카 바		
	2. 담 요				II. 의 복		
7	○외 겹				1. 남 자 용 한 복		
8	○두 겹			27	○바지 및 (하 복) 저고리		
	3. 전 기 담 요			28	○ // (춘추복)		
9	○1 인 용			29	○ // (동 복)		
10	○2 인 용 이 상			30	○두루마기(춘추복)		
	4. 요			31	○ // (동 복)		
11	○성인용( 솜 )			32	○겹 저 고 리		
12	○ // (화학솜)			33	○조 끼		
13	○ // (오리털)				2. 신 사 복 상 의		
14	○ // (스폰지)			34	○순 모		
15	○유아용( 솜 )			35	○혼 방		
16	○ // (화학솜)			36	○순 면		
	5. 전 기 장 판			37	3. 남자셔츠 및 웨타		
17	○1 인 용				4. 신 사 복 하 의		
18	○2 인 용 이 상			38	○순 모		
	6. 베틀 개			39	○혼 방		

품목 번호	품 목 명	⑬ 취득시기 수량		품목 번호	품 목 명	⑬ 취득시기 수량	
		계	87구입			계	87구입
40	○순 면			61	○조끼(배자)		
	5. 남자평상복바지				13. 원피스(별)		
41	○혼 방			62	○기성복(하복)		
42	○순 면			63	○ // (춘추복, 직물)		
	6. 남자토파, 잠바			64	○ // ( // , 니트)		
43	○춘추용			65	○ // (동복, 직물)		
44	○겨울용(가죽)			66	○ // ( // , 니트)		
45	○ // (오리털)			67	○맞춤복(하복)		
46	○ // (직물)			68	○ // (춘추복)		
	7. 남자코트, 오바			69	○ // (동복)		
47	○여름용(비옷)				14. 브라우스		
48	○춘추용(바바리)			70	○기성복(하복)		
49	○겨울용(가죽)			71	○ // (춘추복, 직물)		
50	○ // (직물)			72	○ // ( // , 니트)		
51	8. 예비군복(별)			73	○ // (동복, 직물)		
52	9. 넥타이			74	○ // ( // , 니트)		
53	10. 남자운동복(별)			75	○맞춤복(하복)		
54	11. 남자수영복			76	○ // (춘추복)		
	12. 여자용한복			77	○ // (동복)		
55	○치마 및 저고리(하복)				15. 여자정장상의		
56	○ // (춘추복)			78	○기성복(하복)		
57	○ // (동복)			79	○ // (춘추복, 직물)		
58	○두루마기(춘추복)			80	○ // ( // , 니트)		
59	○ // (동복)			81	○ // (동복, 직물)		
60	○겹저고리			82	○ // ( // , 니트)		

품목 번호	품 목 명	⑬ 취득시기 및 수량		품 목 번호	품 목 명	⑬ 취득시기 및 수량	
		계	87구입			계	87구입
83	○맞춤복(하복)			105	○겨울용(오리털)		
84	○ // (춘추복)			106	○ // (모피)		
85	○ // (동복)			107	○ // (기타)		
86	16. 여자셔츠 및 웨타				20. 여자코트, 오바		
	17. 스커트			108	○여름용(비옷)		
87	○기성복(하복)			109	○춘추용		
88	○ // (춘추복, 직물)			110	○겨울용(섬유)		
89	○ // ( // , 니트)			111	○ // (모피)		
90	○ // (동복, 직물)			112	○ // (가족)		
91	○ // ( // , 니트)			113	21. 여자운동복(별)		
92	○맞춤복(하복)			114	22. 여자수영복		
93	○ // (춘추복)				23. 남학생의복		
94	○ // (동복)			115	○상의(하복)		
	18. 여자바지			116	○ // (춘추복)		
95	○기성복(하복)			117	○ // (동복)		
96	○ // (춘추복, 직물)			118	○하의(하복)		
97	○ // ( // , 니트)			119	○ // (춘추복)		
98	○ // (동복, 직물)			120	○ // (동복)		
99	○ // ( // , 니트)				24. 여학생의복		
100	○맞춤복(하복)			121	○상의(하복)		
101	○ // (춘추복)			122	○ // (춘추복)		
102	○ // (동복)			123	○ // (동복)		
	19. 여자도파, 잠바			124	○하의(하복)		
103	○춘추용			125	○ // (춘추복)		
104	○겨울용(가족)			126	○ // (동복)		

품목 번호	품 목 명	⑩ 취득시기 및 수량		품목 번호	품 목 명	⑩ 취득시기 및 수량	
		계	87구입			계	87구입
	25. 아 동 복			148	○기 타		
127	○상하연결식(하 복:별)			149	4. 혁 대		
128	○ // (춘추복:별)				5. 목 도 리		
129	○ // (동 복:별)			150	○모 피		
130	○상 의(하 복)			151	○실 크		
131	○ // (춘추복)			152	○기 타		
132	○ // (동 복)				6. 선 그 라 스		
133	○하 의(하 복)			153	○국 산		
134	○ // (춘추복)			154	○외 국 산		
135	○ // (동 복)			155	7. 가 스 라 이 타		
	26. 유 아 용 의 복			156	8. 파 이 프		
136	○상하연결식(하 복:별)			157	9. 우 산		
137	○ // (춘추복:별)			158	10. 양 산		
138	○ // (동 복:별)				11. 여 행 용 가 방		
139	○상 의(하 복)			159	○대 형		
140	○ // (춘추복)			160	○중 형		
141	○ // (동 복)			161	○소 형		
142	○하 의(하 복)				12. 서 류 가 방		
143	○ // (춘추복)			162	○가 죽		
144	○ // (동 복)			163	○인 조 가 죽		
	Ⅲ. 장신구 및 가방			164	○프 라 스 틱		
145	1. 가죽 장갑(결레)			165	13. 학 생 가 방		
146	2. 지 갑				14. 남 자구 두(결 레)		
	3. 핸드 백			166	○신사화, 캐주얼화		
147	○천연파충류가죽			167	○부 츠		

품목 번호	품 목 명	㉑ 취득시기 및 수량		품 목 번호	품 목 명	㉑ 취득시기 및 수량	
		계	87구입			계	87구입
168	○군 화			188	○자개 및 옷칠		
	15. 여 자구두(컬레)			189	○기 타		
169	○숙녀화, 캐주얼화				4. 찬 합		
170	○부 츠			190	○자개 및 옷칠		
171	16. 운 동 화(컬레)			191	○기 타		
	Ⅳ. 식기 주방 용 품				5. 구 절 판		
	1. 밥 상			192	○자개 및 옷칠		
172	○자 개(4인용이하)			193	○기 타		
173	○ // (6 인 용)			194	6. 밥그릇(공기포함)		
174	○ // (8인용이상)			195	7. 대 접		
175	○ 옷 칠(4인용이하)			196	8. 접 시		
176	○ // (6 인 용)			197	9. 반찬그릇 및 종지		
177	○ // (8인용이상)				10. 화 채 그 름		
178	○ 호 마 이 카(4인용이하)			198	○크 리 스 탈		
179	○ // (6 인 용)			199	○기 타		
180	○ // (8인용이상)			200	11. 커 피 잔		
181	○프 라 스 틱			201	12. 한 식 찻 잔		
182	○기 타(3인용이하)				13. 술 잔		
183	○ // (4인용이상)			202	○크 리 스 탈		
	2. 찻 상			203	○기 타		
184	○자 개				14. 물 컵		
185	○ 옷 칠			204	○크 리 스 탈		
186	○ 호 마 이 카			205	○기 타		
187	○프 라 스 틱				15. 제 기		
	3. 쟁 반			206	○금 속		

품목 번호	품 목 명	①9 취득시기 및 수량		품 목 번호	품 목 명	①9 취득시기 및 수량	
		계	87구입			계	87구입
207	○목 기				27. 칼		
	16. 수 저			228	○요 리 칼		
208	○스 텐 레 스			229	○과일용 및 양식용		
209	○금·은 도 금				28. 주 전 자		
	17. 찻숟갈(티스푼)			230	○스 텐 레 스		
210	○스 텐 레 스			231	○양 은		
211	○금·은 도 금			232	○사 기		
212	18. 포 크			233	○법 랑		
	19. 냄 비			234	29. 절 구		
213	○법 랑			235	30. 양 념 절 구		
214	○스 텐 레 스			236	31. 멧 돌		
215	○양 은			237	32. 채		
216	○철 제			238	33. 국 자		
217	○파 이 렉 스			239	34. 도 마		
	20. 솔			240	35. 주 격		
218	○양 은			241	36. 바 가 지		
219	○스 텐 레 스			242	37. 식 기 건 조 대		
220	○무 쇠 솔			243	38. 키		
221	○압 력 밥 솔			244	39. 약 탕 기		
222	21. 수 동 식 국 수 틀			245	40. 강 판		
223	22. 수 동 식 분쇄기			246	41. 솔 병		
224	23. 신 선 로				42. 밥 통		
225	24. 후 라 이 팬			247	○스 텐 레 스		
226	25. 찜 통			248	○법 랑		
227	26. 시 루			249	○양 은		

품목 번호	품 목 명	①9 취득시기 및 수량		품 목 번호	품 목 명	①9 취득시기 및 수량	
		계	87구입			계	87구입
	43. 바    계    쓰			270	○양            은		
250	○프   라   스   틱			271	○스   텔   레   스		
251	○양            은			272	49.소   쿠   리		
252	44. 채            반				V. 취   미   ,   오   락   용   품		
	45. 도    시    락				1. 꽃            병		
253	○일   반   형			273	○금   속   제   품		
254	○보   온   용			274	○사   기·유   리   제   품		
	46. 김    치    통			275	○수            반		
255	○냉   장   고   용(스   텔   레   스)			276	2. 어            항		
256	○   "   (프   라   스   틱)			277	3. 새            장		
257	○김   장   용(스   텔   레   스 40포기 )			278	4. 개            집		
258	○   "   (   "   "   "   "   " 30포기 )				5. 비   디   오   테   이   프		
259	○   "   (   "   "   "   "   " 20포기 )			279	○녹   화   테   이   프		
260	○   "   (   "   "   "   "   " 10포기 )			280	○공   테   이   프		
261	○   "   (   "   "   "   "   " 5포기 )			281	6. 콤팩   트   디   스   크		
262	○   "   (프   라   스   틱 40포기 )				7. 바    득    판		
263	○   "   (   "   "   "   "   " 30포기 )			282	○두   께   2   치   이   하		
264	○   "   (   "   "   "   "   " 20포기 )			283	○두   께   3   치   이   상		
265	○   "   (   "   "   "   "   " 10포기 )			284	8. 나   무   바   득   알   통		
266	○   "   (   "   "   "   "   " 5포기 )			285	9. 세   발   자   전   거		
	47. 향    아    리			286	10. 어   린   이   자   전   거		
267	○ 1   말   미   만			287	11. 보    행    기		
268	○ 1   말   이   상			288	12. 유    모    차		
	48. 다    라    이			289	13. 베    비    차		
269	○ 고   무(프   라   스   틱)			290	14. 유   아   용   욕   조		

품목 번호	품 목 명	①9 취득시기 및 수량		품목 번호	품 목 명	①9 취득시기 및 수량	
		계	87구입			계	87구입
291	15.편 치 볼			311	29.고 기 바 구 니		
292	16.건전지용장난감			312	30.등 산 화		
293	17.블럭장난감(조)			313	31.스케이트(롱)		
	18.인 형			314	32. // (휘겨)		
294	○인형(30cm이상)			315	33. // (하키)		
295	○동물인형(50cm이상)			316	34.로라스케이트		
	19.천 막			317	35.스케이트보드		
296	○6인용이상				36.테니스라켓		
297	○5인용이하			318	○나 무		
	20.버 너			319	○철 제		
298	○석유버너			320	○프라스틱		
299	○가스버너(국산)			321	37.오 리 발		
300	○ // (외제)			322	38.고 무 보 트		
301	21.코 펠 (셀)			323	39.덤 벨		
302	22.배 낭			324	40.아 령		
	23.야외용침낭			325	41.권투글러브		
303	○오 리 털			326	42.야구글러브		
304	○화 학 솜			327	43.알미늄야구뱀		
305	24.야외용돛자리			328	44.탁 구 뱀		
306	25.야외용침대			329	45.배드민턴라켓		
307	26.냥 시 대			330	46.축 구 공		
308	27. 릴			331	47.농 구 공		
	28.릴 대			332	48.배 구 공		
309	○5m이상				Ⅵ.기 타 집 기		
310	○5m미만				1.담 배 함		



품목 번호	품 목 명	⑩ 취득시기 및 수량		품 목 번호	품 목 명	⑩ 취득시기 및 수량	
		계	87구입			계	87구입
333	○철 제						
334	○목 제						
335	○석 제						
336	2. 탁상용 라이타						
337	3. 전 화 대						
338	4. 보 석 함						
339	5. 연 필 칩 기						
340	6. 앨 범						
341	7. 제 도 기 구						
342	8. 구 급 함						
343	9. 빨 래 건조대						
	10. 사 다 리						
344	○철 제						
345	○목 제						
346	11. 정 원 용 우 산						